

제422회 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6일(수)

장 소 법 제사법 위 원 회 회 의 실

의사일정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1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96)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3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제출)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5.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3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3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3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3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4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4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4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4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4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4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4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5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5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5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5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5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5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5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7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7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7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7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7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7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94)
 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8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제출)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0.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9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9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6)
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3)
9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
9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
10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1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1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1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9)
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7)
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1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1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1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1)
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1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
1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1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유상범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9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11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11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11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11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11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11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11
1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11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11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23
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23
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23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3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3
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4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4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4
2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26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26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26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26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26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26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26
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6
3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6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3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3
35.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33
3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48
3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48
3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48
3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48
4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48
4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48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48
4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8
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8
4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9
4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49
4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49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9
4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53
5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53
5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53
5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5
5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5
5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5
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69
5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69
5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69
5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69
5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69
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6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6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6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6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6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6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6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6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7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69
7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69
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75
7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75
7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75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75
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75
7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75
7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94)	75
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75
8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8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8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8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8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8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89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89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9
90.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92
9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2
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93
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93
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93
9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6)	93
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3)	93
9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9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	93
9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	93
10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1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93
1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93
1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93
1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1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9)	93
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7)	93
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10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93
1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93
1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93
1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93
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1)	93
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94
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94

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94
1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94
1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94
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94
1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121.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94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유상법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유상법 간사 외 6인으로부터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여야 합니다.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 준용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유상법 간사님께 짧게 왜 이걸 동의 신청을 했는지만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먼저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사실상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12월 6일과 12월 8일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은 동부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다는 것은 공수처에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되고 그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했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진우 위원, 장동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허위로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국회에 엄연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허위사실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우리 주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당연히 현안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현안질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랑 사전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박범계 위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없었습니까?

○박범계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박범계 간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1분 정도만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뭐, 현안질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안질의의 근거와 사유가 유감스럽게도 유상범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재 피고인 또 피청구인,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권 부분이라든지 또는 압수수색영장 또는 체포·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충분히 설명도 했고 또 공수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혹은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주요한 업무인데 또 이렇게 느닷없이 그러시니까…… 그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음에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원래는 제가 아까 국회법 77조 읽어 드렸다시피 토론 없이 표결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는 좀 들어 봐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짧게 두 분 간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질의를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7인, 반대 1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원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관련 현안질의를 원하고 있으니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 안에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처럼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현안질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 안건 논의 전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당을 대표해서 한 분만.....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이 오늘 너무 많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그래서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한 분만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오늘은 갈 길이 멍니다. 그래서 타 상위 법안 처리하고 우리 고유법안 할 때 그때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1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10시08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문체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 3분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한 번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어제가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서영교 위원 갈 길이 멀어요, 송석준 위원님.

○장경태 위원 시작하면 저희도 다 해야 되니까, 본인 순서 때 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송석준 위원 한 분만 하는 걸로 하지.

○송석준 위원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던 양 이렇게 법사위를 태연하게 진행한다는 것이,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은 관할 지자체가 해당 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신고 대상 계획의 적용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다중운집인파사고의 발생 장소 별로 중앙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는데, 문체부 주관인 공연장에 대해서까지 경찰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근거 규정을 제107조제2항에서 면세물품 전반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환급하는 근거 규정인 제107조제1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수자가 아닌 자가 전승교육자로 인정되면 이수 심사제도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문체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영화관람객에 대해서만 재원 부담을 부과할 책임성이 미흡하고 부담금 재신설 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재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4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웅천 국가유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법안에 대한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하고 법안 처리가 위낙 많기 때문에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공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1조 재해예방조치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한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사자인 경찰 측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경찰에서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요 '통보한다', 경찰에 통보한다는 의미가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그 취지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요 그냥 알고 있으라는 건지, 아니면 상호 협의하라는 건지, 경찰이 협조하라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계획을 경찰로부터 확인받고 통제받도록 하라는 건지 의미가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실효가 없이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하나 나오고요.

또 다중운집 인파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열다섯 개 부처가 다 역할을 분담해서 집중 관리할 시설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부는 어린이집이나 교육시설 같은 게 되겠고

요, 국토부는 공항이나 철도·항만시설 이런 것들이 되고, 문체부는 공연장·체육시설·야영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체부가 소관하는 공연장에만 경찰의 역할을 강제하게 되면 추후에는 타 부처가 소관하는 모든 시설·장소에서의 재해관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무한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기본법상에 지역안전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를 할 때 그러면 경찰이 역할 안 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여의도에 불꽃축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계획 단계에서의 얘기고 실제로 그런 지역에 큰 행사가 있으면 경찰이 지역안전협의회에 참여해서 경찰의 어떤 안전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법의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경찰청과 조금 더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우리 전체회의에 두고 한 일이 주 정도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장관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업무가 확장되고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반대 의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방서는 연락을 하지만 경찰서에 연락을 안 하는 게 조금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게 업무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어차피 연락을 안 해도 안전조치는 경찰청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해서 안전에 조금 더 확실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하는 차원으로 자구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맨 첫 부분에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받은 관할 지자체가 해당 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님,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은 관할 지자체가 해당 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포구청장이 신고받은 내용을 마포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0명 이상의 공연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통보하지 않아도 경찰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통보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경찰이 인파 관리를 해야 되는 치안 유지 책임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하자라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즉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 체계·자구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용어를 좀 정리하거나 하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박준태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 경찰이 소극적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극적 반대.

장관님, 경찰이 소극적 반대 맞지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강력 반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통과되어도 우리는 원래 하고 있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통과되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는 10항 법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게 지금 부과금을 다시 부활시키는 건데, 문체부도 상임위 단계에서 국민에게 새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쨌든 여야 합의로 통과는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마860 사건을 보면, 물론 다섯 명이어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다섯 명의 위헌 의견을 보면 이 부담금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 목적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화관 관람객을 납부 의무자로 해서 재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5대 4로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 날 영화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로 부담금 폐지했다가 지금 시행 후에 한 달여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법이 바뀌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저는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의해서 한 294억 원 정도가 줄었지만 영화발전기금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서 한 20% 이상 확대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기 전에 그런 것들로 일단 충당을 해 보자라고 해서 법률적 문제도 있고 법적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재부의, 부처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물론 기재부가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법 통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기재부가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일단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그때 통과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10항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하세요.

○장경태 위원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께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속기록에 남기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있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1000명 이상의 다중운집 인파에 대한, 저는 알음알음 경찰 정보관들이 보고해서 해당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정보 보고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통보하는 것이, 통보를 공식화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의11에 지역축제 개최 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도 극도의 혼잡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시민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소방법에 근거해서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에 한해서만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지자체가 경찰에 여러 가지 질서 유지를 요청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시민의 안전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각 기관 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저는 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항이면 무형유산의 보전·진흥이니까 유산청이신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유산청 일입니다.

○조배숙 위원 보니까 전승교육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배숙 위원 지금 현행법은 자격요건을 그 분야의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개정안은 그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지요. 이수자로 하는 게 사실…… 전승교육사라는 것은 그 분야의 어떤 노하우를 후대에 알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수자가 하는 것이 사실상은 좀 맞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수자가 아닌 사람이 전승교육자가 되면, 지금 이수자라고 해 갖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수를 받아 봤자 전승교육사의 어떤 요건도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질서를 잡아 놨는데 이런 부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요새 보유자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승 지원 종목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전승교육사 갖고는 한계가 온 게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이수자와 전승자들이 무형유산의 규제 범위 완화를 통해서 조금 더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완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지자체에서 염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거기를 갖다가 다시 또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견들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자체와 조율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승자들이 조금 더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라지는 종목들을 보호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전승교육 이수자라는 심사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중요성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의 전승교육은 또 따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 지정의 무형유산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개 지방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가지고 국가전승교육 산하 이수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지방에서 그게 활성화되어야지 저희가 그걸 또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이수자 이외에 다른 자격요건이 있나요, 전승교육사요?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연수에 대한 자격이 있지요. 5년 이상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지금 상당히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래** 이렇게 하시지요.

법사위에서 항상 논쟁이 있지만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주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부처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는 부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오늘 타 상위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로 하면 시차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지금 아마 10항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영비법.

○위원장 정청래 이것만 좀 확인을 할게요.

영화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이것을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영화비가 올라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현재보다 더 올라가는 건 조금 더 추세를 봐야겠지만, 사실은 좀 더 내렸어야 되는데 현장의, 상영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부과금을 빼 줬는데도 요금은 안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비가 굉장히.....

○위원장 정청래 지금 영화비가 얼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1만 5000원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 정청래 100분의 3 부과하면 2만 원으로 오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지금 더 올리기는 어려울 거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한 1000원 정도를 내려 주라고 권고를 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100분의 3 이것은 어디에, 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주로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고요. 지난번에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에서 500원 정도가 깎여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또 상영관은 그만큼 혜택을 안 주고 있고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는 많이 됐는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다시 정리해서 저희들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저도 문체위를 한 5년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예를 들면 KBS나 EBS 이런 방송에 보면, 환경스페셜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끝날 때 마지막에 자막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지만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방송발전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독립영화나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영화 제작을 못 하는 경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특별하게, 강하게 반대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

체위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지원 위원** 의결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의결을 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가시니까.

○**박지원 위원** 질문 하나, 문화재청장한테……

○**유상범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먼저 하시고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영화·비디오물에 관해서,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부분은 체계와 분명히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부담금 폐지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문제를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 예산에서 한 20% 이상 확대시켜 줬습니다.

즉 부담금의 폐지라는 것은 결국 현법적으로 보면 관람자에게만 특별하게 부담책임을 지운 것이 문제가 있다는 현재의 지적을 분명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것은 현법의 관점까지 적용된 부분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록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 규정을 이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언제든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문체부가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 규정은 저희가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이 돼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부담금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무슨 필요성이 나와야 되는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폐지하고 시행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법안을 또다시 개정해서 살린다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어찌 보면 남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11번 저작권법 위반에 보시면 ‘부칙 시행에 있어서는 법 시행 이후 공고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사실 이 규정은 정당한 권리를 확대·보장하는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효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불이익을 주는 것의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칙 제2조를, 제25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 전에 공고가 진행 중인 사항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괜찮다,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부칙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장관님, 부칙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하기 전 과정에 소급해서 미리 창작자들한테 보상을 해 주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더 많이 소급해서 창작자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좋은 일이네요, 이것은.

그러면 일단 이것만 하자고요.

부칙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유인촌 장관, 한 달에 한국영화 몇 편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지요. 아무래도 요즘은 영화 볼 정신이 아니니까 영화는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왜 정신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나라가 정신이 없는데 제가 영화관 가서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지원 위원 제가 장관 할 때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서 문체부 간부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봤어요. 진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하지만 지금도 최소한 한 달에 1편 이상의 한국영화를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한 것을 장관께서 문체부 간부들과 솔선수범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완도 청산도 가 보셨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번 가 보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지원 위원 제가 이번에 가 보니까 구들장 논배미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물이 없고 그 어려운 작은 섬에서 소위 온돌 있잖아요. 그걸 시골에서는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바위를 놓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 특수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과학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까지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2억씩 완도군에 지원했는데 이건 자기를 농법이 아니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국가유산으로 충분하게 보존할 가치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그 바위를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가 하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도 전남도 완도군을 통해서 문화유산 지정을 요구할 테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빠른 시간 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가 보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예.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유상범 간사님이 좋은 부칙안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유상범 위원 일단 계류하시지요. 한 번 계류해서……

(「처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청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범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년 12월에 부담금 없애는 법안을 우리가 다 합의해서 통과시켰는데……

○박희승 위원 아니, 영화산업이 어렵다는데. 좀 지원하려고 하는 법안인데……

○유상범 위원 그 부담금은 지원이 다 되고 있잖아요, 기재부에서.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의사일정 10항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맨 처음 되고 당시 문광위원으로 배정되고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유인촌 당시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기억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법적으로 또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스타 배우들이, 스타 연예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했으면 좋겠다, 발전기금 이런 것도 좀 내놓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가의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다 처리해 주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00분의 3 정도의 부과금 이런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또 좋은 데로 다 쓰이고 좋은 취지입니다.

유상범 간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아니, 이것 없엔 지가 언제인데 곧바로 너무 그렇지 않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다만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훈의 경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추가로 하나만, 3분만 쓸게요.

○위원장 정청래 그만해요, 이제.

○유상범 위원 아니, 이게 어쨌거나 지적은 해 줘야 될 사항이라서요. 간단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장님, 이 영비법은 사실 부과금이 없어지면서 올해 일반회계에서 보충은 했어요, 다 했고. 그만큼 빠지는 만큼 예산은 했지만 그래도 사실 이게 처음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영비법 부과금 문제하고 출국세 이 문제는 좀 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양쪽이 다 기금에서 관광 쪽 그다음에 영화 쪽에 활용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굉장히 많이 토의하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다 그때 법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나마 보완을 했는데 이번에 역시 영화계 현장은 계속 이것을 살려 달라는 의견을, 상임위원님들께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다시 살리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조금이라도 더 현장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이라 올라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행정실 얘기 들어 보니까 국민의힘이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이나 법인세법도 이것처럼 없앤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지만 또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건 양해할 테니까 3분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토론을 한 번 하는 거지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유상범 위원 다른 것을 한다니까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래도 한 번에 다 해야지.

○유상범 위원 3분만 주면,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해. 이럴 시간에……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유상범 간사는 특혜 질의예요, 지금. 하세요, 특혜를 드릴 테니까. 한 번만 하세요.

○유상범 위원 문화재청장님, 문화기본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문체부에 제출한 게 문화영향평가 아니겠어요, 관련돼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전체 수행한 건수가 한 60건에 불과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 13억 정도를 수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0건 정도면 사실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도 전혀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을 상황인데 이것을 느닷없이 기존 시스템을 갑자기 변경해 가지고 평가전담기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을 두고 수행기관으로 다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이런 식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 국가유산청 소관이 아니라 문체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관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장관님, 다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 문화영향평가는 이게 무슨 법적인 구속력보다는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도 만들고 제언도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화정보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 어떤 법적인 지위를 조금 더 주기 위한 법안도 있고, 그래서 영향평가의 경우는 지금 그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영

향평가를 하는데 문화관광연구원에서 1년에 60건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정도 되면 기관이 수행하고 또 전담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현 시스템인데 굳이 그것을 다시 분화해서 각 지자체에 별도의 수행기관을 둘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수행평가기관을 각 지자체에 따로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뭐 따로 둔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기관에 좀 전담 지정하는 거니까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필요성이 있다기보다는 문화재청에서 조금 더 업무 수행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인가요,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재청은 기관이 있잖아요, 이미.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런데 저희는 좀 수행, 그게 다릅니다. 아마 말씀…… 관광 쪽은 저희가 이제 하지를 않고 있어서요.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12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5항부터 10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 부칙 수정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촌 장관님,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최응천 청장님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정청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감사합니다.

-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기재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기재위 소관 9건의 법률안입니다.

법률안 수정의견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 준용되는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형식은 우리의 법질서 체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 종부세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2028년 1월 시행 예정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납세자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경·면제 시에도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의사일정 제21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 관련 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 의무를 국외 플랫폼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친족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의 범위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은 임시 투자세액공제와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 선택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임에도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중복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납부의무자가 임시 투자세액공제와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규정으로 명확히 정

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외교·안보 현안 대응 등을 사유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건과는 달리 질의할 게 하나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안건 말씀만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예, 그러면 안건과 같이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차관님,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경제 관련한 것들인데요. 제가 한 번 전화도 드리기는 했었는데 어제…… 그제인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췄습니다, 경제성장률 1.9%에서. 그사이 사실은 1.6%, 1.7% 이렇게 이야기되던 게 한국은행은 1.9 이야기하다가 1.5로 낮아지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든 ‘설탕값이 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올랐는데 또 오릅니다. 그러면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잡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도 부탁드리고……

지금 다 위기인데, 제가 요즘 은행들 정기총회라서 가 보는데 다 적자인 것은 아시지요? 대출했는데 대출한 돈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답니다. 다 적자랍니다. 배당을 해 줘야 되는데 배당은 원래 모아 뒀던 충당금에서 배당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많이 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가도 잡는 일을 좀 해 주십시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또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일부개정안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PD수첩에도 한 번 나왔고요. 마약 관련한 관세청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고 이것과 관련한 답변들도 좀 주시면 좋겠다, 법안도 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우선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께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인하를 했는데요, 하향 조정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염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이나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주셨던 설탕하고 커피 가격 같은 경우는 커피는 로브스타나 아라비카, 일단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을 공급하는 인도나 이쪽의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저희 물가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아직 PD수첩을 못 봤는데 그 부분들은 보고 관세청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힘듭니다. 물가를 잡아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16항, 18항, 21항 및 2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19항, 20항 및 2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상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96)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3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까지 교육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겸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그 허위 기재가 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허위사실 기재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

므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요건을 보완하는 한편 임용권자의 임용취소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등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파견근무가 필요한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설명하고 있어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교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에서 제외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53조의2에서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교원의 임용 사항으로 파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근거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파견 권한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를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설립 기준 등 온라인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학교는 소속 학생이 없이 운영되는 특수한 형태의 학교로서 현행법에서 소속 학생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징계, 학생생활기록 등의 규정이 적용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학교안전교육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교육들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고 마약중독 예방교육도 실질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게 되는 교육이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31항 및 제3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30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오석환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하기 전에요, 아마 위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26항 있잖아요. 차관님,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부처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전해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피 또는 상치교사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상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 과정 운영상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평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해 학교에서 같이 다니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상피제도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지 그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상치교사는 학교가 점점 더 줄어들고 학령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전공 과목을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공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끼리의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상으로 근거가 없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이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원의 신축적인 운영과는,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그 우려를 오히려 보완하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차관님, 뭐 좀 여쭤볼게요.

의안 32항인데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조금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부분이 있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 부분은 이견 없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요. 하나 첫 번째 것은, 9%에서 5%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직접적 도움이 되고 재원 소요도 9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학자금 이자의 상환율 120에서 110으로 내리는 방안인데 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것보다 훨씬 적은 1.7%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익은 없습니다마는 상한선을 낮춰 줌으로써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 상환 금액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수용입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박지원 위원** 교육부차관.

○**조배숙 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저한테 먼저 주셨는데……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지원 위원** 아니,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조배숙 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철래** 조배숙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손을 드시기는 했는데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지원 위원** 조배숙 위원님, 미안합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지원 위원** 차관.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위원님.

○**박지원 위원** 계엄령 포고령에도 의료 대란 문제가 포함됐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교육부총리께서, 이주호 장관이 ‘내년도 의대 입시는 원점으로 회귀하겠다. 돌아가겠다’, 이것은 2000명 증원 취소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 의대 들어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지원 위원** 아니, 쉽게 말해 보세요, 쉽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박지원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해라’ 이 명령을 해 가지고 계속 의료 대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입시는 이미 발표됐으니까 증원한 대로 1450명을 하고 내년 2026년도부터는 원점으로 복귀한다면 증원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냐, 안 하냐 이것만 얘기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추계에 의한 방식은, 지속적으로 2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논의는 추계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2026년도 증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내년도 입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거나 저거나 똑같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의사협회 회장을 최근에 만났어요. 의사협회 회장 의견은, ‘국민은 의사 증원에 대한 공감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연간 300명을 하든 500명을 하든 그 안을 과학적으로 좀 제시해 보십시오’ 했더니 의사협회 회장의 견해는 한 명도 증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5년도는 이미 1450명을 입시해야 된다 이렇게 뽑아 가고 지금 오늘 보면, 내년도에는 원점 복귀한다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얘기한다고 하면 의료 대란이 해결될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2026년과 관련돼서는 현재의 증원으로는 2000명이 늘어나 있는 구조인데 2026년도에 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증원이 얼마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을 지금 저희가 청취하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00명 증원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정부의 공식 입장은 2026년도 증원과 관련돼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2027년도는 또 2000명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0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계기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2000명으로 돼 있는 것은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2000명 이상으로 증원되는 걸로, 2000명으로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의대 증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되면 새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위원님.

○**조배숙 위원** 지금 직업계고등학교 있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제주도에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고 3 되면 현장실습 나가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배숙 위원** 거기서 학생이 사망했어요. 그래 가지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해서 조기취업 형태의 근로 중심 현장실습이 아니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제도로 개편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그러니까 학습권의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31항에 보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기 안 제9조의5 보면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실습생의 학습권 관리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이게 콘셉트에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업 실습생으로 가는 학생들은 학생 관점에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현장에 나가 있을 때 두 가지 교육, 어쨌든 현장 상황 자체가 노동 현장이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돼 있는 교육플러스, 권리보호와 관련돼 있는 교육을 동시에 시킴으로써 노동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학습권 보호하는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충돌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운용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도에 제작해서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한 게 있어요. ‘노동인권 지도자료’ 해 가지고 공정무역의 세계화 그다음에 파업 중심의 노조 협상, 4차 산업혁명의 노동인권 침해성. 어떤 편향성

이 있거든요, 또 기업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학습권하고도 충돌이 되는 것이고 또 어린 학생들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노조 편향적으로 이렇게 교육할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을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우선 실습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과 권리보호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 물론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걸로……

○**교육부차관 오석환** 맞습니다.

교육 과정에도 노동인권과 그다음에 산업안전에 관한 그런 교육 과정 자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학생에게 맞는 방식으로의 교육 교재가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활동하는 것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를, 저희가 노동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고용부 산하의 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지금 적정하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료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도 연수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고용노동부의 전문가하고 MOU를 체결했다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리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교원을 몇 명이나 감축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원 감축은 저희가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학령인구의 상황에 대비해서는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교원이 감소하더라도 소규모 학교의 학교 유지를 위한 노력들, 기초학력 이런 걸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를 알고 계세요?

제가 저희 지역에 보면서 중 3이 여섯 반이 졸업했는데 중 1이 일곱 반이 입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 3은 여섯 반 졸업했는데 중 1이 일곱 반 졸업하니 너무 좋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일곱 반이 입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한 반이 늘었겠지요. 그랬더니 중 2가 한 반에 몇 명이냐면, 중 2가 중 3으로 올라가거나……

중 2가 한 반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교육부차관 오석환** 학교마다 매우 다른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최대·최소로 본다고 그러면 정말 소규모인 단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명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선 중 3이 24명이었는데 중 2가 30명이에요, 한 반

예. 중 3 여섯 반이 졸업했는데 중 1이 일곱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 1에서 올라간 중 2를 한 반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중 2가 24명씩 듣던 반이 30명이 됐어요. 이것 뭐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서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교는 모든 학년이, 중 1·중 2·중 3이 27명씩이고.

우리가 학령인구가 줄어서 교사를 줄였는데, 그래서 한 반에 24명 이하에서 더 줄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줄인 교사가 제가 중학교 교사만인지 모르겠는데 3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학교는, 중화라고 하는 학교는 전체 반을 중 1·중 2·중 3, 중 3이 134명이 입학했는데 중 1이 162명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중1이 29명씩이에요. 반을 줄여서 선생님을 아예 없앴더라고요.

초등학교를 그다음에 봤더니 초등학교는 확 줄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 여러분이 중학교 교사를 줄이면서 중학교는 학생이 전부 다 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한 명씩 줄이거나 아예 많아진 학교는 학급을 하나씩 줄이거나. 얘기 들으셨지요?

여기 보면 조정훈 의원안, 사립학교 중등교육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됐는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제교사를 다시 뽑은 걸로 알아요, 계약직 기간제 교사. 그런데 정교사에게 배울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중학교 애들이 잘 배워야, 더 얘기를 넣고 초등학교를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를 줄여서 학생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제가 교육부장관께도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행안부가 인원을 안 줘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하는 말이 기재부가 안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래서 지금 대책이 없는데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 아마 지역의 중학교 상황을 보면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줄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말씀.....

○**서영교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서영교 위원** 현장 얘기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황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교육부차관 오석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기재부, 행안부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준다 그래서 단순하게 줄이는 방식이 아니고

특별한 수요에 해당하는, 이렇게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도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교 등등에 대한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는 정원은 저희가 조정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학령인구가 줄어 가는 과정이 연차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는 어쨌든 지금 정원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되 일단 배정을 했을 때 교육감께서 수용 계획에 따라서 학교에 정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학급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섬세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서영교 위원 잘 알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늘어났더라도 그런 줄어든 학급 운영을 하기 위한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좀 더 섬세하게 저희가 교육청하고 상의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모든 부분이 같이 그럴 겁니다. 전체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7항 및 3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24항부터 26항까지, 28항, 29항, 31항 및 3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책을 꼭 갖다 주세요. 보고하러 와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5.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11시13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과방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께서는 기존에 상정했던 35항을 제외하고 33항 및 34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33항과 34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 및 보궐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공개 대상인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할 경우 회의 개의가 제한되어 활발한 정책 논의가 제한되고—2페이지입니다—정부 내 타 위원회 및 국회 등도 의사·의결정족수를 이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가 없으며 민생 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법령상 기한이 있는 안건의 심의가 지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제22조제4항제4호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국내 저작권 침해 사항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권한이 중첩될 우려가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신속한 차단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4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방통위원장님, 우선 늦었지만 복귀 축하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감사합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방통위 개정안 올라왔는데 당연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게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하게 지금 의견 대립이 있는 법안이지요?

우선 방통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이번에 탄핵심판을 겪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치법 관련해서는 국회 여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지금 현재도 두 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1월 23일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의결했던 것이 호우지역의 피해자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두 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인을 의사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정부 위원회에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의결을 했지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의결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집단거주시설에서 계약한 통신업체에 의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옮겨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결함으로써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이용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명의 상임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의결을 할 수 있게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체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곽규택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3인을 지명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연히 정부기관이라는 것, 성격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국회에서 이런 대결구도, 타협이나 대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지 않는 구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칫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이진숙 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2인 이상이라도 빨리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위원장 정청래** 법 취지가 그렇다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직접 입법에 동참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두 명으로라도 최소한의.....

○**위원장 정청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됐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 위원장 정청래 됐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말한 그 법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방송통신융합국회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이었고 또 방통위 설치법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주로 제가 주도해서 방통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IPTV법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합의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다섯 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해라라는 것이 입법취지예요. 당시 법안소위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로 해라, 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런 취지로 하자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섯 명 중 세 명 이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반수가 5인 전체가 만장일치로 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야당 추천 인사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국회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끌고 뭉개고,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예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짐작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 법안소위 속기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장경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 장경태 위원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효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제가 인정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 되었건 돌아오신 만큼 좀 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해 주시라는 요청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인 하시지만. 그러니까 결국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의결정족수를 타 위원회 및 국회 등도 의결정족수 이와 같이 엄격히 규정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답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확인하시는 않겠지만 국회법 54조에도 재적의원의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5인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이 두 명 임명하시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 장경태 위원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한 명 임명하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 장경태 위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인 하잖아요. 결국 3인이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합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과반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통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야당

추천 봇의 방통위원을 이렇게까지 막을 줄 몰랐는데 만약 방통위원 임명하셨으면 제가 보기에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3인에서 3인 출석으로 2인이 의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력화되고 2인 추천 의결로 김효재 직무대행부터 계속 의결해 가지고 지금 150건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적해 왔던 거고, 그냥 차라리 정상 절차대로, 대통령 임명직 두 명 그다음 여당 추천 한 명, 3인으로 의결하시고 2인은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속기록에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래서……

○장경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3인이 출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력화된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5인 중 야당이 두 명의 방통위원, 야당 추천의 두 명의 방통위원 반대하신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대신 대통령 임명직과 여당 추천의 3인이 출석하셔서, 본인들이 세 명이라도 출석하셔서 의결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견인데, 이것 저희가 지금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의사정족수는 규정돼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 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2인 체제입니다. 계속해서 2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8월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민주당이 저를 본회의 표결을 거부를 해서 제가……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9개월 9일 동안 기다리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좀 들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경태 위원 제가 법안에 대한 얘기를 질문드린 것……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데 3인을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답변을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유상범 위원 답변을 막지는 말아야지.

○장경태 위원 그 얘기까지 들어가시면 최민희 방통위원 왜 임명 안 했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제가 말씀드린 건 3인이 그러면 방통위 운영하는 데 어렵냐는 질문 드린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장경태 위원님도 이진숙 위원장님도 제가 발언 끊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라니요? 들으면 좋지요.

○**장경태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잖아요. 3인 체제로 운영이 어렵냐는 질문이잖아요. 그게 어렵진 않지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 답변 포함 3분입니다. 위원장이 운영하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질의시간 3분을 다 쓰고 답변도 안 들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 답변 포함해서 3분이라고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답변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위원장 재량 사항이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자기 마음대로지 그게 어떻게 재량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재량이라고요.

○**유상범 위원** 재량의 일탈이에요, 그건.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여기에 무슨 발표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고요. 특별하게 발언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건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 답변과 관계없이. 아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질의 좀 할게요.

○**곽규택 위원** 추가 토론 좀 할게요.

○**조배숙 위원** 여야 왔다 갔다 해야지요.

○**유상범 위원** 여야 왔다 갔다 해야지.

○**박범계 위원** 조용히 좀 해요, 질의 좀 하게.

○**유상범 위원** 여당이 했다고 야당 시켰으면 다시 여당으로 와야지.

○**위원장 정청래** 아까도 국민의힘 위원님 연속 두 번으로 한 적 있어요.

○**유상범 위원** 거긴 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손을 들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위원이 벌써 손을 들었어요.

박범계 위원 하세요.

○**유상범 위원** 편파적이네, 편파적이야.

○**위원장 정청래** 편파적인 게 아니라 아까 국민의힘도 연타석으로 두 번 한 적 있어요.

○**유상범 위원** 그것은 손을 안 들었으니까 연타석으로 한 거고.

○**주진우 위원** 그것은 지금 여야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위원 빨리하세요, 질의. 질의하세요.

○**박범계 위원** 좀 조용히 해 봐요.

○**주진우 위원** 미리 들어 놓을게요.

○**박범계 위원** 주진우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미리 손 들어 놓는 것은 무효예요.

○**곽규택 위원** 왜요?

○**박범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끝나고 손 드세요.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 이진숙 위원장님!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 박범계 위원 오랜만입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 박범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 박범계 위원 윤석열 페청구인이 내일모레면 탄핵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그 두 명만 가지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일단……
- 박범계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파면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 박범계 위원 관계없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알지 못하고……
- 박범계 위원 왜 알지 못해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두 번째로는……
- 박범계 위원 본인을 임명한……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국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박범계 위원 현재는 4 대 4, 법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이 다 패소를 했어요. 헌법 21조에 방송의 자유를 규정한 것은 알고 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 박범계 위원 헌법 21조를 부정합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 박범계 위원 오케이.
- 방통위가 소위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러면 5인 체제와 2인 체제, 그 2인 체제에서 복직을 했어요, 현재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볼 때 정권이 어디냐와 관계없이 합의제 기관으로서 5인 체제에서 과반수가 넘는 3인으로 하자는 입법취지도 반대합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해 주시기를……
- 박범계 위원 답만 하세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범계 위원 반대하는 건 아니지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고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합의제 기관의 원뜻이지요. 그렇지요? 답을 하세요, 묻는 말에.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 박범계 위원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박범계 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인정합니다.

○박범계 위원 본인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헌법적·법률적 책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은 다 틀렸다라는 얘기고 헌법재판관님들은 4 대 4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복직은 하셨어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볼 때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이 파면이 되는 경우에 대선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여야 어느 쪽의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본인이 방송을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을 사랑합니다.

○박범계 위원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합의제 기관,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국가적 공적 기능의 수행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섯 명 중에 적어도 세 명이 나와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이 입장이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일단 법원에서……

○박범계 위원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 이진숙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찬성하는 결정도 나왔고 반대하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답 안 해요?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리고 5인의 합의제 기관에 충실할 수 있게 3명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박범계 위원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유상범 위원 답변 좀 들어 보세요.

○박범계 위원 답변을 안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

○위원장 정청래 이진숙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위원장 정청래 여기 법사위에 출석한 타 부처 장관들이 이진숙 위원장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장관 없어요. 아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국

회를 존중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여기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려 나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박범계 간사님 발언과 관련해서 1분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17대 문광위원을 하면서 KBS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KBS 수신료는 여당이 되면 여당에서 올리자 그리고 또 그 여당이 야당이 되면 올리지 말자 그리고, 지금 몇십 년째 이게 공전 상태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당과 야당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지만 야당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 돼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주장하신 대로 2명으로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의 안정성, 방통위원회 합의제 기구의 법안의 취지, 정신에 맞는다면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입장을 떠나서 그 법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마치 KBS 수신료처럼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2명으로 하면 어때 이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나중에 야당이 되면 본인들이 춤고 배고파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부족했던 미비점 이것을 보완하는 게 맞다니까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잠깐 질의 전에 한 말씀만 좀 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한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도대체 지금 탄핵심판 중인데 어떻게 내일모레 탄핵이 될 거라고……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안 드렸어요.

○송석준 위원 과연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안 드렸어요.

○송석준 위원 간사님이 그런 말씀 여기서 하시면 되나요?

○이성윤 위원 회의 좀 하게 그만 조용히 좀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신중한 탄핵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존중해야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어제 최종 변론기일이었는데 무슨 시나리오를 보셨나 봐요.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의 발언시간을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이 방해하지 마세요.

질의하세요.

- 송석준 위원 그 시나리오 좀 보여 주세요.
- 박범계 위원 뭔 시나리오가 있어……
- 이성윤 위원 뭔 시나리오가 있어요?
-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세요.
- 송석준 위원 탄핵심판 시나리오가 있나 보네요.
- 이성윤 위원 국민들은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
- 송석준 위원 내일모레 탄핵 가결되고……
- 박균택 위원 그걸 상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식.
- 송석준 위원 인용되고 과면한다며.
- 장경태 위원 최재형 전 의원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최재형 의원님.
- 박균택 위원 시나리오가 아니고 상식이지요, 상식.
- 송석준 위원 시나리오 좀 보여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들 하세요.
- 주진우 위원 제가……
- 송석준 위원 여기서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되지요.
- 이성윤 위원 왜 안 돼요? 해도 되지요.
- 곽규택 위원 법안 심사하는데 탄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지요.
- 송석준 위원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재판장님들이 헛갈려요, 헛갈려.
-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 김용민 위원 그쯤 방어했으면 됐습니다. 그만 방어하세요. 할 만큼 했어.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거야말로 제지를 시켜 줘야지요.
-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1차 경고 직전입니다.
- 송석준 위원 본인이 국회를 대표해서 다녀왔잖아요.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송석준 위원 이렇게 위헌적인 발언을 법사위에서 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1차 경고합니다.
- 박범계 위원 아직도 과연이 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 송석준 위원 1차 경고하려면 무슨 10차까지 하지.
- 위원장 정청래 계속 이러면 발언권 중지합니다.
- 박지원 위원 위원장!
- 송석준 위원 도를 넘어도 유분수지요.
-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 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세요.
- 송석준 위원 내가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나는 룰을 지키잖아요. 위헌적인 발언을 하세요.
-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은 계속 경고에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 박준태 위원 어차피 안 주면서 뭘 중지해요?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발언하세요.

꼭 이렇게 발언권 중지를 받아야 발언을 안 하시는구먼.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계속해요? 중지시킨다고 내가 안 할 줄 알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퇴장시켜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세요.

○주진우 위원 방통위원장님, 지금 2인 체제로 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2023년 8월부터 2인, 두 사람입니다.

○주진우 위원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던 것은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계속 요구하는 게 국회에서 제발 세 명을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지금 현재 방통위의 상황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너무 정확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법안 자체가, 방통위는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부처 중의 하나입니다. 합의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마비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명으로 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마음먹으면 현재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추천 안 하고 계속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탄핵까지도 국무위원들은 재적 과반이면 탄핵소추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하시는 데 얼마 걸렸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174일, 거의 6일 빠진 6개월 걸렸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잘 운영되도록 하자고 이 법안을 냈는데 실제로 보면 탄핵소추해 가지고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마비가 됐고 국회에서 현재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다음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로서의 성격이나 워낙 국민 삶에,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비될 수 없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장치를 두자고 하는 것이고 그 규정대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 국회 추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도 주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2인 체제의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는 법까지 바꿔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해서 세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법사위 또는 국회에서 들이는 노력이 있었다면 3명의 상임위원들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기 법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3인 이상 출석을 해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똑같은 얘기 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들어 보세요. 그래도 대체토론하는데 위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예단해 가지고 막지 말고 어차피 시간도……

○위원장 정청래 참 사사건건 참견도 많으시네요,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장이 얼마나 재량을 일탈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꾸 안 주려고 하니까……

○조배숙 위원 장관님 나오셨는데 해당하는 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몇 분 들어 봐도 똑같은 얘기, 동어반복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동어반복인 것 같다는 것도 얘기를 못 합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들의 말을 그렇게 자꾸 막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막는 게 아니라요 유상범 간사님도 위원장석에 앉아 보세요. 지금 세 종에서도 정부부처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만성 살은 다 빼자는 거예요. 콤팩트하게 진행하자는 거예요.

특히 타 상위법은 우리가 체계·자구 심사권만 있는 거예요. 자꾸 내용에 대해서 손대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자, 지양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헌법 체계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박준태 위원 부처가 이견이 있으니까 들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3인에 대해서 체계의 문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지금 다른 법도 있어요. 의사일정 제35항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토론 종결까지 막지 마시고, 일단 박균택 위원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성윤 위원 찬성합니다.

○박희승 위원 찬성.

○위원장 정청래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토론 종결 동의에?

이성윤·박희승 위원님 등의 토론 종결 동의가 일단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이에요?

○곽규택 위원 이 법안에 대한 거지.

○유상범 위원 이 법안에 대한 것만? 전체 토론 종결은 아니지요?

○위원장 정청래 올라온 의사일정 이 안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박균택 위원 이 시간 동안 계속 이 질문만 나오면 이 전체에 대한 토론 종결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35항에 대해서……

○박준태 위원 곽규택 위원님 말씀까지 들어 보시지요.

○곽규택 위원 조배숙 위원님 하고.

○위원장 정청래 35항…… 제가 법대로 다 진행합니다.

행정실장이 35항은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답니다.

35항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배숙 위원 유 장관님, 오늘 의사일정 제35항에 보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안에 올라온 거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하고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수정의견이 좀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보니까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15항, 전제되는 세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조문을 8조, 11조, 2개를 설시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11조 4항에 특례에 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 8조에다가 11조 4항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여기서……

○조배숙 위원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 내용이, 8조의 내용이 11조 4항에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이 자구를 반복하지 말고 제11조 4항으로 이렇게 대체하자 이런 자구 수정에 해당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임위 의결 안하고 이게 분명히 8조하고 11조 4항에…… 8조에서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의 11조 4항에 이렇게 썼으니 이 8조에 해당 법을 설시하는 그 규정에다가 11조 4항으로 아예 못을 박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못을 박자기보다는 같은 내용이니까, 11조 4항으로 대체를 해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기재부에서 또 수정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보면 제8조에 ‘사용료·대부료 감면’ 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법 11조 4항에 보면 똑같은 규정이 또 있는 거예요. 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수익 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이런 경우에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있어서 아예 이것을 8조에다가 11조 4항을 넣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같은 얘기인데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의견…… 저도 같은데 8조 부분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방법의 규정, 이게 11조 4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11조 4항은 또 있고, 이렇게 길게 쓴 거를 11조 4항 이렇게 바꾸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위원장 정청래 이런 걸 보고 자구 수정이라고 그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말씀드린 대로 자구 수정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팬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근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이성윤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33항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전체 다.

○곽규택 위원 34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걸 넘어가세요?

○위원장 정청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올라온, 지금 올라온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는 거지 한 조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 동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곽규택 위원 의안별로 토론 종결을 하셔야지 3개를 뮤어 가지고 토론 종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질의할 때 33, 34, 35 뮤어서……

○곽규택 위원 3분 만에 그걸 다 해요? 슈퍼맨인가.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대신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토론 종결하고 나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질의하고 토론하세요. 표결을 하는 건 좋은데 질의하게 하고……

○위원장 정청래 오늘 유상범 간사나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가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표결하고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를 하시라고, 대신.

○유상범 위원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표결해 놓고 질의를……

○위원장 정청래 질의를 하시라고요.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종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별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이 아니라 지금 의사일정, 지금 올라온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고 위원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그런데 광규택 위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표결을 한 거고. 다만 어여삐 여겨 광규택 위원님의 발언 시간은 드리겠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광규택 위원**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위원장 정청래** 일단 토론 종결 표결은 했고 이제 의결을 하면 되는데 광규택 위원님 발언하세요, 3분.

○**광규택 위원** 결국에는 회의록에 남기는 의미밖에 없는데 그래도 방통위에 이거 입장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의안번호 34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전송자격 인증 업무에 대해서, 안정적인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별도의 인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방통위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표결은 됐지만 그래도 의견은 좀 남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게 잘 아시는 대로 대량 스팸문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23년의 경우를 보면 불법 스팸문자가 3억 건, 4억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2023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144억으로 추산이 되는데,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민간자율협회, 민간협회에 자율적으로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맡겼는데도 약간의 실적 호전은 있었지만 그래도 불법 스팸문자, 대량 문자 발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그런 공식협회가 공식 인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협회가 필요하다는 수정안을 저희가 내놓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3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지원 위원** 제가 33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토론 종결했는데 뭘……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했습니다.

3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3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 별지로 배부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이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처 장관들이 계속 출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하고 농해수위까지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3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82)

3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3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4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4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4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4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8항까지 국방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기존에 상정했던 48항을 제외하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7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에 관해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군인복지실태조사의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의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수와 복지는 법률상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군인복지실태조사의 형식으로 실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는 독립적으로 실시하되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6의3호라목은 장교 등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조문 중 일부 범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타 입법례를 감안하여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원·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1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상정된 후 재정지원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으나 이후 국방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번안의결을 하여 우리 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신설 과태료 부과 시 행위시법주의를 따르도록 한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일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및 김종철 병무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직무대행님, 39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민간 동일집단’ 이런 법문이 있는데요. 민간 동일집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다른 법이든 아니면 이 법 내에서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원래 법안에서 민간 동일집단하고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고 저희가 그 집단을 선정하는 것에서의 제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국방위에서 논해진 것은 국방부가 판단할 수 있는 가용한 집단을 국방부가 선정하고 그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고하는 쪽으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국방부에서…… 그래도 적어도 예를 들면 지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뭐 이렇게 뭔가…… 법에 지금 아무 기준도 없고 그 해석 기준도 없는데 그러면 적어도 어떤 기준과 해석 기준에 따라서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기준이 있다면,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혀 없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일단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령이든 어디선가는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 행정규칙에 그 관련된 조사 방법·내용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장동혁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으로 저희들이 수행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국방부에서 판단하고 정해 놓은 그 규칙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통과됐다는 뜻인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38항 군사경찰 관련해서, 뭘가 직무수행 중에 어떤 업무가 발생했을 때 소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진짜 억울한 사안들은 형법상 정당행위로 다 보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약사법이나 산림조합법 같은 데 보면 자진신고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무슨 기여가 있을 때 감면하는 제도는 있는데 군사경찰의 직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일반적인 감면 규정을 두지

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규정 체계랑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그 규정이 필요한지 이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위에서 논할 때, 국방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형법하고 가정폭력 처벌법, 그 특정 법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추가시켜서 보완하는 쪽으로 전문위원 의견이 빌의가 됐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안 있지만 무조건적인 것을 다 이렇게 처벌을 감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관련되어 봤을 때 군사경찰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법규들이 국방위에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김선호 대행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범계 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뭐 지금 저희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면 그동안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추진했던 것이 통과가 되어서 왔네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범계 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따로 안 주신다 그래 가지고 만난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으로부터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는 전화가 왔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왔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대체토론이야.

○**박준태 위원** 주제에 맞게 합시다.

○**김용민 위원** 왜 현안질의 할 수 있지.

○**박준태 위원** 시간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토론할 것도 손 안 들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박범계 위원**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질문 잘 못 들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전화번호 확인해 줬습니다.

○**박범계 위원** 어떤 취지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전화번호 확인해서 알려 줬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전화번호가 비화폰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비화폰으로 확인이 됐

습니다.

○**박범계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지원 위원** 저도 좀…… 제가 몇 번 발언 신청해도 국민의힘만 주고 야당은 안 주고.

○**위원장 정청래** 아까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박지원 위원** 아니요.

○**유상범 위원** 우리 대체토론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박준태 위원** 송석준 위원님 먼저 주세요.

○**송석준 위원** 저도……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은 모르세요? 오늘 발언권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발언 정지 10분 지났잖아요.

○**유상범 위원** 풀면 되잖아요. 이제 줘요.

○**위원장 정청래** 드리려면 발언권 중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제가 해제를 안 하고 있어요.

○**유상범 위원** 지금 해제하세요. 해제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지원 위원** 국방장관직무대행!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박지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부 군 장성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인사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직 장성 인사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하지 마세요. 지금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서 일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차관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인사를 하시면 그것은 알박기 인사입니다. 하지 마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우리 군 주요 직위자들이 공백이 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은 드리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한 문제는 곧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실 때 나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에요. 알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6항, 41항 및 4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37항부터 40항까지, 43항부터 48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차관님, 석종건 청장님, 김종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5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5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12시02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의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담긴 우편물·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판매용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면서 신고를 지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생활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식생활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식생활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26조제2항 후단에 대해 전국 학교 및 어린이집 대상 식생활교육 성과 평가 시 교육현장 업무 부담 가중 및 교육 경쟁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50항의 26조 2항 '식생활교육 지원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에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없습니다.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저희가 조정을 하여 '식생활교육 지원 성과'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부처 간 의견은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없습니다. 해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5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 제26조 2항에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잠깐만요. 송 장관한테 하나…… 조금만 계세요.

하나만,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박지원 위원** 지금 이 법사위원회에 농어촌 출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 이 아니라 꽤 됐지요. 지금 수도작 경작지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책이 확실하게 발표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대체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도 나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전략작물이나 대체작물에 대한 적불금을 지급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농민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대체 그게 나왔다는 데 왜 그렇게 혼돈을 느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설명회를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좀 본격적으로 잘 설명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국가유산청에다 설명했는데 완도 청산에 있는 논배미는 아시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것을 2억씩 보전하다가 작년부터 안 해 버리는 것은 뭐예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 박지원 위원** 그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살펴보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과학이더라고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 박지원 위원** 꼭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리고 벼 경지면적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배면적.
- 박지원 위원**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또 대체작물 재배에 대해서 보전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제출)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4항까지 산자중기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적합성 기본조사, 심층조사 및 주민투표 실시 등 부지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시설 및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용법조의 명확화를 위한 구성요건 정비 등 경미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53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지선정 특례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력 판매 주체인 사업시행자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주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주체에서 국가를 제외하고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54항입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과 사업자를 해상풍력발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선정하고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공동접속설비 등과 같이 의미 이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공무 출장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산자부차관님, 방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해상풍력발전법상 발전지구와 신재생에너지법상 집적화단지랑 차이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의제 범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풍법에 따른 발전지구가 되면 전반적인 인허가 의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사업 시행에 있어서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차이가 없다고 하면, 부칙에 집적화단지도 심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된다고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집적화단지로 기존 신재생법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고, 현행법으로 이 해풍법에 따른 발전지구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줬습니다만 저희가 필요 최소한도의 심의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하고 최대한 소통을 해서 큰 문제 없이, 이미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필요 최소한도로만 봐서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구분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는 신재생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로 편입이 되기를 희망하면 신청해서 편입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당초 요청했던 바는 정부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자동 편입이 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저희는 이 해풍법에 따라서 기존의 풍황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 의결 절차를 둘고요.

다만 지자체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는 이미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 현재는 전남·전북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서 즉각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차질이 안 되도록 즉각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해상풍력발전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세계적 조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규모나 참여 대상은 산자부가 정한다 하더라도 주민, 투자 기준 그리고 어업 범위 등 이런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잘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 주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저희가 지자체 의견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번 연락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관님, 저도 해상풍력 관련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론 지금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산업 또는 에너지 측면에서 오고요.

지금 이렇게 해상풍력이 논의되고 있는 또 지자체나 자치단체에서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 어민들이 어업권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도 동의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어민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피해를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입는 피해가 그분들이 입는 피해만큼 적절히 보상이 안 되거나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대책 마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민들께서 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본인들의 생존과 생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저희가 이 법에…… 그런 우려가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돼서요.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항에 해수부에서 수산업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차관님, 의사일정 제54항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어쨌든 해상풍력 보급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취지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23조에 보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가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를 생략한다는 거지요. 예타 면제가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게 경제성

없는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우려도 있는 거고요.

지금 2011년 이후에 공공 예타 통과율을 보니까 약 6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고, 이 예타라는 게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하는 심의 과정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자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도 기재부 입장이랑 동일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2조에 재정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23조에 공공기관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예타 면제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은 저희가 전달했습니다만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해상풍력 자체가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해외기업들이 투자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예타와 관련된 절차를 통해서 늦어지면 오히려 공정한 경쟁에서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조항을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 예타와 같은 경우는 실제 발전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크게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예타의 필요성은 정부 입장으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거중조정해서 의견을 존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 보니까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보니까요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정법을 만들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떤 특례조항을 두기 시작하면 이게 다수 법령으로 또 확산될 우려도 있고 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면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들어 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조항만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기재부 누가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고요.

어제부터 고준위 방사성 이 법하고 해상풍력법하고 시민단체들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나 봐요. 지금 계속 문자가 우리 법사위원회들한테 아마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중위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여야 합의가 된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여야 합의 됐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법을 붙잡자는 것은 아닌데 좀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유상범 위원** 해상풍력법?

○**위원장 정청래** 2개 다, 고준위법하고.

그래서 일단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 볼게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박봉용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정합성입니다.

예타 면제는……

○위원장 정청래 무슨 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지금 해상풍력법……

○위원장 정청래 예, 해상풍력법.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타 면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하에서 운영되어야만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해상풍력법 외에 총 마흔아홉 건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로, 법제화로 확산되게 되면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사업 다수가 예타를 면제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타 제도가 자칫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행 국가재정법하에서도 예타 면제를 시급성이나 국가정책적 판단하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 규정 신설의 실익이 있는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 주시고요.

해상풍력 이 부분은 해수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해수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내용을 가지고는 법을 잡지 않고 체계·자구나 부처 간 이견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데 지금 2개 부처가 반대 의견을 전해 왔어요, 그런데 또 여야가 합의는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 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주로 반대되는 게 해상풍력법인가요?

○위원장 정청래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앞의 그것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보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해상풍력법은 다음에 통과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부처 간 이견을 조금 조정하고?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 법안 22조·23조를 보면 말이에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박범계 위원 예타 특례에 관해서 아마 22조는 기재부장관을 주어로 해서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38조 1항에 예타 면제 조항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주 예외적인, 엄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 조항으로 돼 있어요, 기재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이 법안에 특별한…… 기재부가,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크게 염려를 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기재부장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기재부장관의 예타사업 심사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임의 조항으로 돼 있고요.

23조의 주어가 기재부장관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인데 이 예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다’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기재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통과시켜도 기재부장관의 예타에 관한 권한이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한 발자국 진전한 거예요. 차관님,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통과시켜도 무난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원래 김원이 의원이 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제안설명은 위원회 대안이라서 간사가 불가능한데, 지금이라도 와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일단 53항에 대해서 한번 조금 추가 질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위원장 정청래** 몇 항이요?

○**유상범 위원** 전력망 확충법 먼저 논의하고 그것은 김원이 의원 오시면……

○**위원장 정청래** 예, 전력망 확충법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이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견 얘기해 주세요.

담당자 안 나왔습니까?

○**유상범 위원** 나와 있지요, 아까 그……

○**장동혁 위원** 부서가 다른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부처도 달라?

○**장동혁 위원** 부서가 다른……

○**위원장 정청래** 안 나왔으면 됐고요.

○**박범계 위원** 크게 문제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해수부에서는 해풍법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 규정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수부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됐습니까, 해수부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해수부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시고요. 해수부에서는 반대가 없다고…… 어차피 그 조항도 이 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에서 달리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해수부의 권한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해수부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마이크 앞에 가서 이견이 없음을 얘기해 주세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같은 부분 경우에도 일정 부분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반대 의견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2항, 53항, 54항,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배숙 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

○**유상범 위원** 추가 논의를……

○**박범계 위원** 아니, 추가 논의 안 해도 돼.

○**위원장 정청래** 지금 해소가 됐잖아요.

○**박범계 위원** 전력망 특별법도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임의 조항이에요.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이것도……

○**유상범 위원** 아니, 항상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업 주체가 한전이고 한전이 지금까지 직접 지급을 했던 것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 놓으면 그렇게 돼 버리니까……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국가 또는 한전이니까요. 그것도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려를, 우리가 한번 담당 차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질문을 해서……

○**위원장 정청래** 지금 들었잖아요, 다.

○**유상범 위원** 담당 차관…… 이것 이 항은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 53항은, 국가 전력망은 아예 질문도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우려를 정리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자, 이렇게 하자고요. 이게 지금 법도 많은데 우리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된 법안은 웬만하면 다 처리를 했고 단 예외적으로 부처 간 이견이, 부처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숙성시켜서 다음번에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법안 자체가 아니라 하위법령 관련해서.

○**위원장 정청래** 예.

○**박희승 위원**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박희승 위원** 지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그리고 전력망 확충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피

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 만드실 때 그런 어떤 지역주민의 우려라든지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위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청래** 예,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아까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임의 규정이니까 강제적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어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결국 이게 재정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입법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꾸…… 임의 조항이기는 하지만 임의 조항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법이 있는데 각 개별법마다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임의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쌓이면 일반적인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 통과의 전제조건이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산중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위원님이 위원장이고 거기서 문제없이 여야 합의가 됐다고 그리고 또 부처 간 의견도, 제가 그래서 좀 숙성을 시키려고 계류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해소됐다고 하니 저는 그냥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좀 이러저러한 우려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박희승 위원님께서, 하위법령을 만들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부처의 반대가 아닙니다.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숙성시켜서 통과시키고는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그러세요.

○**유상범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률의 체계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정과 관련돼서 예타 면제와 같은 큰 재정 지출, 그러니까 예타가 들어가는 큰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항상 국가재정법이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외를 규정할 때도 그 해당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전체의 체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정합성을 만들어 놔야만 결국은 재정 운용의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60, 70개의 법률이 있는데 한 번 우리가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면 결국은 어느 정부가, 어느 당에서 국정을 운영하든 간에 결국은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법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했던 이런 것들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

어지면서 사실은 재정 당국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 규정이라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임의 규정을 해놨다는 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제외하고 특별법의 규정을 통해서 예타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예타 면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확 터놓는 겁니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것과는 좀 다르게 기재부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정청래 아니, 기재부가 뭘 강하게 얘기해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특히 해풍법에 관련돼서는 기재부가 ‘체계의 정합성 문제 자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보를 하려고 하시다가 박범계 간사께서 ‘임의 규정으로 했으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입장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재부도 반대를 한다고 그리고 해수부도 반대를 한다고 그리고 또 해당 시민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숙성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해수부에서 반대하는 게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또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고 또 차관께서 시민들의 그런 우려를 좀 해소하는, 시행을 잘 한다고 그러니 그러면 됐지요. 제가 무슨…… 여기가 지금 산자위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산자위원장이 이철규 위원장이에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또 지금 산자부에서 통과돼도 괜찮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요, 법사위에서. 여기서 무슨 특별한…… 법사위가 월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김원이 간사도 지금 오라고 했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김원이 왔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어디 있어요?

저기 가서 잠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김원이 법사위원장이 부르면 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원이 위원은 뭘 설명해 주시냐면,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나를 터놓으면 또 여러 개의 특례 조항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김원이 여러분들, 여야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력망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첨단미래전략산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누구나, 지금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든가 빅데이터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반도체산업, 모든 첨단미래산업들이 전기 먹는 하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준비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어렵사리 만들어진 전기를 육상으로 옮겨서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송배전선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나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은 이미 계통 포화 지역으로 선언이 돼서 31년까지 새로운 발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광주·전남, 주로 전남 서남권에서 해상풍력이 만들어질 건데 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필요한 서울·경기·인천으로 보내 줄 수 있는 계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통을 만들 때 가공선로가 진행되는 곳에 분명히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을을 지나게 되면 가공선로의 선하지를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밀양 송배전선로 싸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혹은 지하화하는, 지중에 묻는 시설이라든가 혹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정부가 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요즘 아시다시피 지금 자자체들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방 재정들이—이 상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약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기간망법에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지자체가 힘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여야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히 동의하였고 그때 박형수 위원님 그다음에 고동진 위원님 그다음에 서철민 위원님인가 이런 분들이, 여당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해 줬고 전체회의에서도 통과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았고요.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이런 부분은 어떤 점이 좀, 만약에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반대한 내용이 뭘까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러니까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 할 경우에 당초에 임의 규정이었는데 의무 규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이어서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강행 규정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안 들어 주고 있는데 이 조항만 들어 줬을 경우에는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런 취지의 기재부 반대 의견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준위방폐장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너무 공감대가 깊게 형성돼 있었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가 일치해서 통과였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합의를 했고요.

해상풍력법은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 의견을 표현했어요. 예타 면제 규정에 관해서 여기만 예외적으로 특혜적으로 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것도 논의됐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예, 방금 말씀드린…… 아까 앞단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발전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 발전시설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전기가 서울·경기로 올라오는 전력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런 사업을 힘 있게 해 나가려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재부의 동의를 받게 된다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잖아요.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와 첨단에너지 전쟁이…… 아니,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을 좀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대체적으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을 다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이라든가 혹은 이럴 때 공공에너지 분야도 필요한데 공공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 너무 주도하기 때문이요. 그러면 공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한전은 이 사업을 못 합니다, 법상. 그래서 한전 자회사들, 남동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를 하는데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발전자회사들이 참여하는데 이번에도 신안에 있는 우이 발전 사업이, 남동발전이 예타 통과를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아주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래서 예타를 면제할 조항이 있어야 사업의 속도 문제라든가 지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속도를 붙일 수 있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여야가 공히 합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타 기준으로만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철도 하나, 도로 하나 놓는데도 예타상은 못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예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부터 계속 문자가 날아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의 해외자본 잠식과 민영화, 30여 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래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30여 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입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풍력은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과정으로 흘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6~7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해상풍력 발전법이 통과가 되면 32개월 정도로 단축이 돼서 이 사업이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될 거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것 같고요.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려면 석탄이나 석유를 때는 탄소에너지에서 무탄소에너지로 전환, 탈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가피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무탄소·탈탄소에너지를 만들어 내야만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가 없다, 지구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 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해상풍력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은 무탄소·탈탄소,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생태 파괴를 막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는 해상풍력이 오히려 생태 파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주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이게 공사하는 동안에 부득불 물속에, 바닷속에 하부구조물을 설치하고 타워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주변의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파괴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런데 그게 무섭다고 이 상황을…… 지금 현재 그러면 탄소를 계속 뺄 거냐, 석탄·석유를 계속 뺄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에너지를 만들 방법…… 태양광은 주민들의 실제 어떤 반대라든가 여러 민원들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해상풍력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다, 약간의 피해는 각오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게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박희승 위원께서 하위법령을 그런저런 민원이나 반대 목소리도 잘 감안해서 시행령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원성이 없도록 잘 하자, 잘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그것은 법안의 19조인가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사전에,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담을 수 있도록 법안이 준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다른 분들 뭐 또……

○박균택 위원 너무 타당한 말씀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또 질문 있으면…… 여당 위원님들……

○위원장 정청래 없다고요. 됐다고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감사합니다.

○박균택 위원 너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추가로.

김원이 간사님, 여기 보면 공공기관 예타 면제 관련돼서 입찰 과정에서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 가능’ 이렇게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와 같이 특정 공공기관의 경우에 입찰이 가능하다로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이게 발전자회사들 얘기인데요. 너무나도 불행하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다 보니까 과거의 석유발전사들이 지금 아직도 꽤 많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폐쇄돼야 됩니다. 석유발전사들은 결국은 다 폐쇄해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유상범 위원** 석탄화력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석탄이요, 석탄. 죄송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곧 이제 폐쇄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발전사들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새롭게 기술을 배워서 전환하게 되면 노동 문제도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둔 거고요. 그것은 이미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용이하게 해 주자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공공성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간 발전사들 중심으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국가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 민간 발전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이 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 예타 조항이 그 뒷단에서 계속 이어지는 논의에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것은 차관님한테 물어보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한결같이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차관님, 예타 중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는 산자부도 지금 반대하고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일단 입법례는 첨단산업특별법에 이 관련 조항이 처음에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예타와 관련하여서는 이 조항이 아마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임의 조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게 돼 있는데요, 재정예타의 경우에는 실제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를 지을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조가 쓰일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조의 경우도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석탄발전소 200MW 이상 보유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타를 가더라도 그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을 쓸 일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조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조항이 더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계류가 된다든지 통과가 안 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당시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예타와 관련해서 조항이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선언적으로라도 분명히 국가의 의지를 피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임의 조항이고 의지 표명……

위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잘 알았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필요하면 종종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고맙습니다. 오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남호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32)
5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5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5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5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7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7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14시41분)

○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1항까지 환노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1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오염도 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13조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지자체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로 환경부의 설명대로 해당 다중시설에 그 결과가 있는 경우 반영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권한과 사무의 일부를 이양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제26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권자에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환경센터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4페이지입니다—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등 과세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재난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있어 법 해석에 혼란을 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상청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때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행법상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부장관이 국토부장관 등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확보를 요청하는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시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57조의2제2항에서 수입·판매 등의 금지 대상 제품과 판매 중개의 금지 대상 제품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수한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5조의7제5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부받은 민간의 재산, 토지 등에 대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 제45조의7제1항은 무상 대여도 민간 참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합목적적으로 사용·관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려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조자 등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 비율의 확인을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확인하며 확인을 받은 경우 제조자 등이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절차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용 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54조에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제한 기간 동안 허용되는 용도의 시설·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사항 중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등에 정부의 출연금 등을 수입으로 한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제도와 안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환경표지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되므로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례를 각각 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9부터 제71항까지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9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완섭 환경부장관, 장동언 기상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승 위원 환경부장관께 물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북환경청은 남원시의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재검토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1일 자로. 보고받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박희승 위원 결국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의견으로 사료되는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준비해 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장관님, 자동차 한 대가 파괴하는 환경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리산 환경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산악열차보다 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자동차에 의한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리산은 연간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성삼재 등을 통해서 통행하고 있는데 배기ガ스와 소음·악취로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년간 지리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건수는 906건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친환경 산악 전기열차는 전 구간 기존 도로 위에 레일을 설치하고 매연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과 로드킬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위스 산악열차에, 가 보신 적 있지요, 스위스 용프라우? 안 가 봤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박희승 위원 안 가 봤어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박희승 위원 스위스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서 산악열차를 건설했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용프라우 산악열차 타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사업 구간은 전면적으로 산악열차 신설이 아니라 1km 시범 구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전북환경청에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좀 다시 살펴보시고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원래 사업 취지, 효과를 보려 했는지 살펴보시고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백두대간이나 지리산 등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오늘 환노위 소속 법안은 특별한 쟁점과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부분만 말씀하시고.

○조배숙 위원 64항에 보면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입장이 긍정적인 입장인데, 지금 한국환경공단 나왔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장관 김완섭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거기서는 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말씀드릴까요?

○조배숙 위원 예, 말씀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현행법 21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온배수를 재처리 쓰게 되면 그 쓰는 주체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도 찬성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다만 저희가 듣기로 의원님들 발의하신 법안이 21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없이 다른 조항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 발의하신 법안에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이 법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환경부장관 김완섭 동의합니다.

○조배숙 위원 동의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지요. 65항이요. 거기에 보면 또 환경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또 경기도에서 좀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도에서 이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이미 시·도지사가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기초지자체장이 또 한다는 것이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약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여기 경기도는 안 오셨을 거고, 한번 파악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말씀하신 경기도 우려 사항에 대해서 임의 조항으로 그래서 바꿨고요. 그리고 이게 생태관광을 많이 인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세업자 같으면 인증할 때 비용이 드는데 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인증은 생태관광지역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158개소 중에서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곳에 한하여民間은 제외하고 지자체장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의 주요 업무는 환경을 해치는 일이에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환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저한테 취임 인사 오셨을 때 제가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이것 잘 살피시라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장관님이 취임하기 전에 그때 환경부도, 한강유역청이나 관계자들 제가 수차례 불러서 이것 예산 배정하지 마라, 그리고 법령을,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다 위반해 가지고 이것 행정소송 하면 패소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타 들어가기도 전에 9000억 들어가는 쓰레기소각장 예산을 3000억을 신청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전액 삭감을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백몇십억 했다가 좀 줄여서 96억으로 했는데 결국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난 예산국회에서.

서울시가 주민들의 행정소송에 패소한 거 알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위원장 정청래 그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막 했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취임 인사 오셨을 때도 이건 패소될 수밖에 없다. 왜? 폐촉법 시행령을 명백하게 다 위반했거든요. 정부 지자체 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시키는 일이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패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마치 서울시 편드는 것처럼 예산 달라니까 예산도 막 배정해 주고, 지원 예산. 그랬다가 서울시도 환경부도 창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주고 지원해 주고 절차 간소화해 주고 편의 봐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환경부는 다른 부서하고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 위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됐고요. 그게 저희들이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었고 그 시설이 있어야만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걸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고려됐었습니다. 법원에서……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말을 그렇게 살짝 비껴서 꼬지 마시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마포는 이미 쓰레기소각장이 하나 있다고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그것을 이제 중개축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그중에서 4개가 있어요. 그러면 21개고, 없는 데서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법도 어기고 시행령도 어기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서울시는 창피당하고 패소하고 환경부는 옆에서 좀 거들다가 뺄셈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저희가 어떤 특정 지자체를 거들거나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청래 앞으로 잘하세요, 이런 일 있으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5항 및 5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56항부터 58항까지, 60항부터 71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섭 장관님, 장동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감사합니다.

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7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7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7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7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

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8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8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8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8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8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8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14시58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2항부터 87항까지 복지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72항부터 8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73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의 자율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조치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소비자에게 위법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80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안으로 위기아동·청년을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온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심리상담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온둔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제정안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의 적용이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검토의견과 동일한 우려를 이유로 안 제5조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8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화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로 인정하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여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제한하고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 통과 시 펜타닐 등 특정 성분을 한정하여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적용하고 반복처방이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 등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투약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나 절차 간소화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3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노동자단체 등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무기

구를 둘 수 없으므로 부득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신설은 기존 개별법상의 의료인·약사 등의 각 직역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85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등록증과 그 복사본 등의 부정 사용을 처벌하며 원격대학에서 일정한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대학 등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그 합격자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31일 현행법상 대학에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관련 부분은 이러한 판결과 관련하여 원격대학의 학생에게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원격대학의 학위 취득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증 관련 부분의 경우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에 대하여만 복사본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등록이 취소된 장애인등록증에 대하여는 그 복사본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용으로 오인 가능성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등록이 취소된 장애인등록증에 대하여도 그 복사본 등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언어재활사 자격 부분의 경우 원격대학의 학위를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요건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안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현장실습교과목에 관한 같은 호의 단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통일·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원격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 인정은 확정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일반대학 졸업생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7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 제17조는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개정안 제19조에서 그 위반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분야의 유사 입법례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해 별도의 보상 기준이 신설된다면 기존의 인과성에 기반한 보상 원칙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기준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례 등에 대해 폭넓은 국가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오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가 있고 과도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상단, 법무부는 법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74항·76항·77항·78항·79항·81항, 86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72항·75항·제84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기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85항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이 있어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거는 통과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추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추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류하고 오늘은 통과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이거 85항은 그렇게 아시고요.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토론할 내용 중에 85항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84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해서 장관님, 14조에 보니까 임신·출산·육아로 인해서 휴가를 내거나 휴직자가 원활히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대체인력을 두도록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는 병원협회에서 반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경우에 예산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결국은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구속력도 없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할 때 이 내용을 평가의 하나로 넣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협회에서 당초 반대는 있었지만—상임위원회에서—전체 조항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은 철회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뭐 저희가 어제까지 협의할 경우에는 반대가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회의 직전에 저희 실무자가 연락을 해 보니까 병원협회 측에서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저희 생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 조항을 재량 조항으로 바꾸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3항·4항이 전부 다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마저도 없다면 사실은 3항·4항은 거의 선언적 규정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 존치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들어가는데 대상 기관은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이런 평가 조항도 없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상 기관들의 입장은 분명할 텐데 장관님께서 이 조항이 운영될 때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고 병원의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가 너무 병원,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은정 위원** 지난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참석하셨고요, 국무회의라고 지금 지칭하는 회의에 대통령실 참석하셨고 12월 12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셨던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당시 조사받으실 때 참석했더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하고 계셔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앞자리에 국정원장이 앉아 있어서 국정원장이 문건을 보고 있길래 달라는 제스처를 했더니 그것을 줘서 받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담화문이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런 내용 비상계엄 문건이었다, 이렇게 조사받으셨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수사 대상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확인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것은 맞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조사는 받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은정 위원**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기일에 나와서 ‘자신은 비상계엄 문건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이 당시에 조사받은 내용하고는 배치되고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그 전에 전제가 되는 저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거기서……

○**박준태 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질문 해요, 다른 질문. 법안 얘기해요, 법안 얘기!

○**박은정 위원** 검찰에 사실대로 말씀하셨는데 조태용 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의 진술하고는 배치가 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조태용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어떤 문건도 보지 못했고 원탁테이블의 종이를 본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고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복지부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진실하게 말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죄송합니다. 저 스스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대체토론하는 거지……

간사님, 뭐 해요, 도대체?

○곽규택 위원 아니, 현안질의 하자고 할 때 찬성하시든지.

○박준태 위원 어디 가십니까?

○유상범 위원 어디 가요, 어디 가?

○박범계 위원 아니……

○유상범 위원 말 좀 하라니까 어딜 가. 도망을 가면 어떡해?

○박준태 위원 분위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웃음소리)

○주진우 위원 저는 법안 토론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오늘…… 제가 말할 게 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 법안 토론 좀……

○위원장 정청래 예,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께 76항 관련된 법안만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허위 진단을 통해서 병역 면탈한 사례가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환자 진료정보가 민감 정보고 사적 영역 중에서 핵심적인 영역이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7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규정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은 병역법 소관인 국방부 등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것인데요. 병무청에 따르면 70명에서 한 110명 정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기록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는데 병무청에 제출된 기록이 외부로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대상자는 그러면 한 70에서 100명 정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10명 정도.

○주진우 위원 110명 정도 그 레인지에서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주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성윤 위원 저는 제86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지원에 관한 법률 여쭤보려고 그립니다. 이게 일명 장애인 자립지원법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장애인단체에서 저한테 여러 번 질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22년에 보건복지부가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개설을 금지하고 2041년까지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성윤 위원 이 내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21년 8월에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시범사업의 결과를 감안해서 본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장애인단체에서 찬반이 있으시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의료전문화시설이 필요하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말씀하신 장애인 탈시설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과 장애인 탈시설법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분들이 원래 거주하던 지역에서 자립지원, 그러니까 일반분들하고 어울려 갖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법인데 그렇다고 모든 시설을 다 폐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료시설이 달려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친하신 분들끼리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시범사업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문제는,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자립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자립지원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쫓겨날까 봐, 지원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걱정을 좀 불식시키는 발언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거주할 수 있느냐 그 대책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복지위에서 지역의 통합돌봄법도 이번에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노약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3월에 본시행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장애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성윤 위원** 중증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이 아예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원은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 조배숙 위원** 복지부장관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조배숙 위원** 87항인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그것 질병청장님 소관이신데요.

-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저희 청 소관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그쪽에서 얘기는 현재 원칙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에 대개 기준으로 인과성을,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그러니까 기존의 원칙하고 좀 어긋난다,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시청 앞에서 계속 농성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기존의 의사협회 입장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신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저희 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 제정에 대한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법이 없었지만 지원제도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이 아니지만 지원제도를 확대해서 운영을 해서 특히 사망자에 대해서는 거의 한 55%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일부 있어서 기재부에서도 그런 면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의사협회에서도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백신 전반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그리고 사회 전반의 피해보상에 미칠 영향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배숙 위원** 그러면 질병청장님 입장에서 이 법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하고, 이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대안으로 올라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사협회에서는 반대 입장이 있었고 부처 중에서 기재부·법무부, 일부 신중 검토 또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

을 주셔서 저희도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면들 조금 다시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배숙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1분 더 넣으세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상이 아니고 지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저희는 지원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보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조배숙 위원 여기서는 보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 백신이나 이런 것을 사실 좀 검증을 하고서 접종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단체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그러니까 백신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접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거든요.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위원님, 그런데 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이 됐고 특히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백신, 안전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그렇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 안전하다는 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통 제약이나 이런 데 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론들이 많아요.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반론들이 많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됐고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보상·지원제도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폭넓게 운영을 해 온 편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보상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하시고 유상범 간사님 하시고.

○박희승 위원 복지부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희승 위원 제가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옮겨 와서 자주 못 뵙는데.

보건의료 지원, 아까 모성보호에 대해서 장동혁 위원님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박희승 위원 잘 질의해 주셔서 지극히 공감하고, 더구나 오늘처럼 출생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

지원법도 상당히 위원회에서 잘 정리해서 올리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의료 사태 때문에 2026년도 의사 수급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추계기구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는 것은 과거와 똑같이 의사를 양성하는, 인력 수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저희가 그때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의사단체들 만났을 때 자기들도 일정수는 증원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계기구에서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일단 오늘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교육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고 그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증원 전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의대협회의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3058명으로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상임위에서 의대 정원을 그냥 하지 말고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논의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수급추계 등을 통해 가지고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수용성이 높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 부분도 추계 관련해서 그 부분 적용이 되어야지 단순히 증원만 해서 다 해결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가 또 관심 가졌던 공공의대 관련해서도 그런 논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저희가 1차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금 2차를 준비 중입니다. 2차는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급여 실손 보완대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저희가 의료계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 증원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필수의료에 우수한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대 그다음에 지역의 사례 그것도 복지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질병청장님, 코로나 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여기서 보면 5조가 피해 보상하는 규정인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유상범 위원**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사상으로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법무부가 이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인과관계 추정의 규정을 넣고 있어요, 시간의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감염병과 관련돼서 결국 보상을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을 하는 거고 그러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추정은 되지 않았더라도 뭔가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갔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추정을 하면 그것은 보상으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적 개연성을 가지고, 웬만하면 다 걸리겠지요. 그렇게 해서 보상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지원했던 것은 어떻게 될 것이며, 보상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결국 이런 식으로 그로 인한 환자와 보상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법률적 갈등만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보상의 원칙은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굉장히 새로운 법률적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질병청장님도 그런 점에서 오늘 오셔 가지고 이걸 통과보다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87항은 법무부도 여러 가지 그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논란이 큰 문제 그리고 만약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끌고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2소위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계류를 해서 한번, 위원장 계실 때 2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 보는 게 내 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계류를 해서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이것 보고 있는데요.

질병청장님, 보통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상을 많이 해 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하지요. 그런데 보상해 주는 돈은 또 국민들이 낸 혈세거든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보건복지위에서 이게 왜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국문학적으로 치면 비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문장으로 치면 이것 비문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으로 봐도 비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위에서 이걸 왜 통과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보니까.

○**유상범 위원** 혼자 알지 말고 말을 해 줘야지. 무슨 이유인데?

○**위원장 정청래** 우리 보좌관이 써 온 것 그냥 읽을까요?

○**유상범 위원** 예, 읽어 봐요.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법입니다’ 이렇게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읽으라고 그랬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1호 공약은 그게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 부분은 2소위로 보내서……

○**곽규택 위원** 웬일이세요?

○**유상범 위원** 웬일이야.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래도 2소위가 열리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2소위로 가서 좀 더 토론하고 다듬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항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2소위에 몇 개 더 보내야겠다.

○**유상범 위원** 몇 개 더 보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해?

○**위원장 정청래** 하나 보내서 길을 트면 계속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처럼 2소위로 가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5항은 전체위 계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72항, 75항, 82항 및 8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만 83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83항 의결 안 하셨지요, 아직?

○**위원장 정청래** 아직 안 했어요.

○**유상범 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83항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세요.

○**유상범 위원** 장관님, 이게 보건의료기본법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상범 위원 여기서 만든다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자문기구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자문기구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어요.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상범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법에다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처럼, 원래 다른 기본법의 체계랑 완전히 다른 것을 규정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통과돼서 올라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사무국의 경우에도 법률이라는 직제로 돌리겠다는 대안도 저희가 냈고 위원회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이것 한번 계류하셔서……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단순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내부 담당 직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기본 법률과의 체계가 맞지 않게 규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계류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상범 위원 기본체계와 맞지 않은, 다른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은 이런 규정을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계류를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83항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한 번 하고 다음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의견이 좀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의견이 좀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추가 논의해서 좀 더 숙성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83항은 계류하는 것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73항, 74항, 76항부터 81항 및 86항은 전문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는 의사일정 제83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오유경 쳐장님, 지영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잠깐. 2소위 회부하는 것 의결하셔야지.

○**유상범 위원** 2소위 회부는 의결 안 하셨잖아.

○**위원장 정청래** 제가 말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안 했어.

○**곽규택 위원** 87항은 안 하셨어요.

○**위원장 정청래** 87항은 2소위에 가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시40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정무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국회 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및 89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및 제89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88항과 89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할인 등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건 전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자체 취약계층 지원제도와의 중복 우려 등을 이유로 그리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는 대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청래** 그냥 하시지요, 웬만하면 이게 여야가 다 합의해서 올라온 거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산업부에서 이견 있다고 하는데 이걸……

○**유상범 위원** 아니, 기관 간에 이견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그냥 통과시킬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하나씩 다 합의를 한 거야.

○**유상범 위원** 이것은 어차피 간단한, 숙려기간을……

○**위원장 정청래** 일단 의결을 하고 한 말씀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래도 의결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짧게 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가만 있어 보자.

지금 산업부랑 한전이랑 이 부분에 대해 반대가 굉장히 심하네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지금 반대 의견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법안을, 금융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이게 법이 통과된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 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안이 됐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산업부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정부 내에서 합의를 보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게 이번 달에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를 할 때도 정부 내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들어 보시고 전기 부분은 포함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부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지원, 그건 배제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은 연체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얘기가 되는 거고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못 내게 되면 그 대상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인을 받고 그 사람이 또다시 대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사실 전기료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많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못 내셔 가지고, 금융채무는 조정이 되는데 전기료를 못 내 가지고 전기의 수급에 애로를 겪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제가 이중 중복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깎아 주더라도 실제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이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조정된 사람도 또 여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 중복해서 또 본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정돈 안 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제도가 활용돼서는 적절하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동통신사 관련해서는요 지금 법에는 없지만 일부가 참여를 해서 협약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와 있는 데는 이게 법에 담기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은 자율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게 법이 되면 좀 강제적으로 그 대상이 넓어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과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 사업자들이 그냥 유지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시작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그런데 서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결국 지금 전기판매업자, 이동통신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제도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하실 때 시행령으로 세분화해서 정밀하게 지원하실 때 결국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정교하게 정리가 돼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경우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당연히 그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동통신사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하는 정도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한 10년 전에 노르웨이 갔었는데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진짜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은 10년 전에 250만 원 정도를 정부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가…… 우리 헌법 10조처럼 기본적으로 필수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먹고사는 이런 문제는 사실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전기도 거의 필수품 아닙니까?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무슨 땅 파 가지고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력할 수 있는 데를 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게 하는 것은 좋은, 선한 법이지요, 이렇게 사실은 강제로 안 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선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유상범 간사님한테는 충분히 토론하실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및 제8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유상범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만 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잘 참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0.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49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0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다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유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9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6)

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3)

9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58)

9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07)

10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1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1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1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9)

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7)

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1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1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1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1)

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1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1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1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92항부터 12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아까, 안 주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거 하고 합시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알권리 및 형사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불허하도록 하며 신청을 불허할 경우 재판장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모경종·허성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1일로 각각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군택·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 기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9개월로 하고 예외적으로 난민 신청·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중대 범죄자인 경우 최장 20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 심사, 보호 기간 연장 승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 출입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 공개 체불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

별하고 상습적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정금 체납가산금 상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행정쟁송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난민 인정에 대하여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행정심판 제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예외 대상으로 유지할 실익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균택·김주영·장동혁·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한하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나친 확대는 지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김현정·민병덕·유동수·천준호·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험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영교·정춘생·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 중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를 ‘및 기타 선거에서’로 수정하였고, 둘째 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와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파견에 대한 근거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소위원회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예.

○**유상범 위원** 오전 중에 여러 말씀 하신 것 중에 고유법 심사할 때 송석준 위원에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에게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는 것이 좋고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저도……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3분 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주시라고……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은 발언권이 중지된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 정도 가지고 발언권 중지를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조배숙 위원** 유상범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먼저 간첩법과 관련돼서 이제는 우리가 빨리 상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간첩법을 1소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께서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다소 우리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벌써 법사위를 수차례 열었고 소위도 수차례 열면서 많은 고유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간첩법의 상정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오인을 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히 간첩법과 관련돼서는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외국인에 의한 범죄,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처벌을 한다는 것은 안심시켜 주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상황이 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군 부대를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언론에서 아주 강하게 지적이 됐고 조속한 간첩법 개정을 요구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상정을 해 주길 요청드리고요.

오늘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당과 경제8단체 대표들이 와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섞인 말씀이 있었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한계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 또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결심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제 주체가 이렇게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이 상황에 국회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기업의 활동이 민생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저지른 이유 중의 하나가 간첩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화도 하고 현재에서 법률대리인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이것은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입니다. 언제……

○**유상범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곽규택 위원** 간사가 간첩법에 대해서 올리라고 말을 했는데 대답을 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언제,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성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심사숙고하고 혹시 그것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내란사태가 벌어져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양쪽 간사님들께서 간첩법에 대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상정을 해야 공청회 일정을 잡지.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마치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해서 계엄을 일으킨 것처럼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곽규택 위원** 국민의힘이 왜 나와요, 거기서!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이 거기서 왜 나오고, 실제로 상정할 시간이 있었는데 상정 안한 게 맞잖아요!

○**박규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어느 간첩이 윤석열 피의자보다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간첩법 상정하자는 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여요?

○**박준태 위원** 다 합의된 걸 가지고 안 하고.

○**이성윤 위원** 사과하세요, 사과!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들께서는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고,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진술인들을 찾아서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정도 안 하고 무슨 일정부터 잡아?

○**위원장 정청래** 그 일정까지 간사들께서 다 협의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그것과 같이 하기로 한 거였잖아요. 다 알면서 저런 거짓말들을……

○**유상범 위원** 상정을 먼저 해야지. 상정을 해야 일정을 잡는 거지.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의 위원들은 또 다른 목소리, 더 많은 목소리, 주주들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원래 갈등 집합소예요. 이해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얘기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한 번 토론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여기서 또 그것을 둘어 반복처럼 다시 토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럼 간첩죄를 왜 공청회를 해,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간첩죄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한 적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토론 충분히 했습니다. 합의까지 다 했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서로 공청회를 하자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적 있어요,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 1소위에서 올라온 것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지요. 아니, 1소위 통과되면 논의가 필요 없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공청회를 하자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공개적으로 상정을 해서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 상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심사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토론회 해요, 토론회 해. 상법이야말로 토론회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박균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말씀, 윤석열 피청구인이 간첩보다 나쁜 거짓말을 했다는 그 부분은 저는 백배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간첩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고 국민을 이렇게 갈라 놓은 적이 있습니까?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을 늘어놨던 윤석열 피의자의 그 문제를 지적하신 건 좋습니다. 그 점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간사 간에 합의해서 일정을 잡으라는 그 말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피의자가 간첩법을 핑계로 계엄을 일으킨 원인으로 잡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옳더라도 한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정을 잡으시는 게 옳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것하고 간첩법하고 뭔 상관입니까? 논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자, 들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안 한 건 맞잖아요, 민주당이.

○**박균택 위원** 아니, 지금 법사위가……

○**곽규택 위원** 아니, 현재 결정 나올 때까지 그런 논의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균택 위원** 지금 윤석열……

○**유상범 위원** 그게 대통령의 탄핵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박준태 위원** 간사 협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왜 이제 와서 간첩법만 간사 협

의를 한다는 거예요?

○**박균택 위원** 저 지금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피의자가 내란을 일으킨 후에 우리가 이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체포를 거부하는 반란 행위를 일으키고 또 현재를 오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법사위를 일으켜서 이 법안을 충실히 논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윤석열 피의자에게 원망을 해야 할 일이지 민주당에 원망을 하거나 법사위원장님한테 원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1월·2월 달에 그 많은 고유법을 처리하는 동안 왜 시간이 없었어요?

○**박균택 위원** 간첩법은 분명히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상정해서 하는 거지, 그것은. 상정도 안 하고 공청회부터 해요?

○**위원장 정청래** 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세요. 상대 위원끼리 토론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어쨌든 위원장님, 간첩법 토론은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내란수괴 피의자의 변명에 동조해 주는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과연이 끝난 후에 일정을 잡아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충분히 잘 알았고요.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마치 면죄부를 주거나 동의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란 전에 공청회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협의를 하라는 거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거짓말하면서 막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란 사태 이전에 이미 공청회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하자는 건 좋은데, 상정을 안 하고 하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공청회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상정을 하고 공청회를 하지 언제부터 상정 안 하고 공청회 했습니까?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동혁 위원** 예.

위원장님, 오늘 송석준 위원님 발언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박범계 간사님께서 대통령의 탄핵이 마치 확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처럼 발언을 하셨고, 물론 여야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기자를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장에서 마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것처럼 곧 과연된다라고 하는데 여당 위원들로서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 여기가 소추한 데야, 여기가 법사위에서 소추했어.

○**장동혁 위원** 물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으로서는 지적하시고 발언권을 중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타위법 심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고유법 심사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약속하신 대로 발언권 제한을 푸시고 송석준 위원에 대해서 우선 의사 진행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요 그야말로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까 민주당 위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의 토론시간을 계속 못하게 방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경고했어요, 중지하시라고. 그러면 중지를 하셔야지요. 주진우 위원은 질문을 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어요, 계속 저 보고 있고.

○**주진우 위원** 제가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그것을 왜 위원장님이 문제 삼으세요, 제가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이 ‘저 토론하겠습니다’ 하고 토론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토론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진우 위원** 제 시간 대신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어떻게 그래도 동료 위원의 입을 그렇게 쉽게 막습니까, 송석준 위원님이 우리 당의 3선 의원이신데!

○**곽규택 위원** 아까 3분 의사진행발언 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주자고 말하면서 지금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는데 또 방해하고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의견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박준태 위원** 발언권 정지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의사진행을 하자면서 주진우 위원의 토론시간을, 의사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제가 경고를 한 거예요, 당장 멈추라고. 안 멈추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했어요.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의사진행발언한다는 게 말이 돼요? 뭐하고 똑같냐, ‘나무를 사랑합니다’ 하고 풋말을 써 가지고 나무에다가 못질을 해 놓는 거예요. 그게 나무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저한테 상정해 달라고 한 분이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입니까?

○**유상범 위원** 내가 상정하자 언제부터 했어요? 계속 얘기했지요.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을 공부하세요. 상정할 필요 없고 그건 잡으면 돼요,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해서.

○**유상범 위원** 아니, 상정을 해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무슨 상정을 하는 거예요? 공청회는 하면 여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아니, 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위원장 정청래**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고 합의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세요.

○**유상범 위원** 1소위에서 합의된 것을 가지고 상정도 안 하고 공청회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공청회는 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따로 할 수 있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좀 공부하시면서 얘기하세요.

○**유상범 위원** 또 공부해요?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국회법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유상범 위원** 뭔 늘상 공부야, 공부. 아이고 참……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박준태 위원** 박지원 선배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봐.

○**박준태 위원** 아니,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의원의 생명이잖아요.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 봐, 그러니까.

○**박준태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 위원장은 나가라고도 했어요. 퇴장도 시켰는데 뭘……

○**박지원 위원** 내란수괴 윤석열은 어제 현재에서 최종 심판 변론·진술을 하면서 ‘간첩’이라는 말을 25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간첩법이 국민의힘만 제안했느냐? 민주당 박지원도 제안했어요. 발의했어요.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입이 1000개라도 간첩이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가 3년간 집권하면서 간첩 하나 잡았어요? 겨우 한 게 민노총……

○**유상범 위원** 아니, 민노총 간첩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요. 그것 다 간첩 아니에요?

○**박지원 위원** 들어 봐요!

○**유상범 위원** 15년씩 다 선고됐습니다.

○**박지원 위원** 들어 봐!

민노총, 국정원에서 추적하던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세상,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그런 국가정보원 점퍼를 입고 압수수색을 한 게 전부예요. 민노총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박지원이 국정원장 하면서 간첩 사건을 둘 구속기소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간첩 잡지도 못하고 야당한테 간첩이라고 뒤집어씌우는데 민주당에서도 간첩법 발의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돼서 다 끌고 왔지 않습니까.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요.

보세요. 한동훈 대표도 국민 뜻대로 하겠다……

○**유상범 위원** 아니, 합의된 걸 상정하자는 게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토론이 아닙니다. 저한테 하세요.

○**박지원 위원** 예.

한동훈 대표도 국민 뜻대로 하겠다 했다가 결국 윤석열 뜻대로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책 냈더라고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국민 뜻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돼야지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또. 왜?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계엄한다. 계엄은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당신들이 해 온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첩 있으면 잡아야 되고, 귀하들의 정부에서 조작하듯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유상범 위원** ‘귀하들의 정부에서 조작하듯’이라니, 그게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조작했다는 겁니까?

○**박지원 위원** 인혁당 사건 같은 것 조작 안 했어요?

○**유상범 위원** 그게 우리 정부예요?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장경태 의원 등도 간첩법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기에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라고 법사위에서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란 사태가 터졌고 공청회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합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협의를 하시라, 공청회를 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지원 위원님 전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간첩 간첩 하시는데 세상에 국정원 청사 CCTV를 공개하는 국정원이 어디 있어요, 간첩 잡는 국정원이? 국정원 법상 국정원 청사를 공개하는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제가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예산, 조직, 인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발설하면 저도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 숫자가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국정원 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공개하거나 발설하면 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간첩들이 국정원 어디 있나 암약하면서 막 해 가지고 그것 공개하는 게 그게 간첩행위예요.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발언도 총량제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긴 것 아닙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 정청래** 아무리 정치적 목적,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국정원 청사 내부 CCTV를 공개합니까? 간첩보다 못한 행위지.

○**주진우 위원** 민주당 입장 반영하면서 너무 긴 거잖아요.

○**박준태 위원** 본인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우리는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만하세요!

○**서영교 위원** 법적 조치합시다.

○**곽규택 위원** 여기 국정원 관계자 아무도 없어요.

○**서영교 위원** 고발합시다. 그러네요, 들어 보니까.

○**위원장 정청래** 따라서 국정원 청사 내부 CCTV를 공개한 자는 국정원법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조배숙 위원** 3분 제한하세요.

○**주진우 위원** 시간 제한 좀, 발언총량제 좀 하십시오.

- 서영교 위원** 조태용 국정원장 등 전부 다 고발합시다.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 조용히 하세요.
- 주진우 위원** 발언총량제…… 너무 민주당 입장인데, 위원장으로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이, 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 유상범 위원** 그게 말이에요, 도대체?
- 곽규택 위원** 참나, 그런 유치한 말씀 하지 마세요.
- 유상범 위원** 유치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위원장이?
- 주진우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절차적인 허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청래**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얘기를!

(장내 소란)

그래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위원님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 청사 CCTV를 공개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 주진우 위원** 그건 밖에 나가서 인터뷰하세요, 그런 얘기는.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 주진우 위원!

- 주진우 위원** 지금은 송석준 위원 발언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에서 떠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 주진우 위원** 이것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청래** 밖에 나가세요.

- 주진우 위원** 발언총량제 하십시오.

- 위원장 정청래** 밖에서 얘기하세요.

- 주진우 위원** 저 못 나가겠습니다. 저도 정지시키세요.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은 별 걸 다 공개하더구먼, 법사위에서!

- 주진우 위원** 어차피 마이크도 안 켜 주는데 정지시키십시오.

- 유상범 위원** 공개한 게 잘못된 거예요?

- 주진우 위원** 송석준 위원 발언 약속하셨잖아요.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왜 여기서 얘기해!

- 곽규택 위원** 어디다 반말이에요, 이것!

- 위원장 정청래** 뭔 반말이야!

- 주진우 위원** 위원장이 무슨 벼슬입니까?

- 유상범 위원** 그게 반말이지 아니면 뭐예요?

- 조배숙 위원** 왜 얘기를 못 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들 하세요.

(장내 소란)

의사진행 방해 발언은 더 이상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송석준 위원.

- 위원장 정청래** 토론해 주세요.

- 박준태 위원** 송석준 위원 발언 주세요.

- 위원장 정청래 토론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얘기 좀 듣고 갑시다.
- 조배숙 위원 발언권 주세요.
-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 조배숙 위원 아니요, 발언권 주세요.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기로 했잖아요.
-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기로 했잖아요.
- 조배숙 위원 발언권 주세요.
- 위원장 정청래 토론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장! 정신 차려!
- 위원장 정청래 뭐라고?
- 송석준 위원 정신 차려!
- 내가 분명히 의사진행 신청했잖아!
- 김용민 위원 토론 좀 합시다.
- 송석준 위원 왜 안 주는 거야!
-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이 없어요, 지금 오늘, 미안하지만.
- 주진우 위원 몇 번째입니까, 지금 도대체!
- 곽규택 위원 이제 위원한테 막 반말까지 하시네.
- 송석준 위원 발언권 없으니까 내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 토론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저 토론합니다.
- 송석준 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었지요.
- 김용민 위원 토론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청래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민 위원 아까 저 시작하려다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법무부차관, 어제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지방검찰청의 11월 13일 자 수사보고서 공개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 김용민 위원 사전보고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사전보고 받은 사실 없습니다.

- 김용민 위원 없어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 김용민 위원 뭐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어떻게?

이것 보면 검사 8명이 작성했어요. 수사보고서는 원래 수사관이 작성하는데 특이하게 검사 8명이 작성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용민 위원 여기 뭐라고 돼 있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이 수사보고서에 보니까 피의자가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으로만 돼 있고 김건희, 윤석열 다 빠져 있네요. 하지만 수사보고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수사보고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피의자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 공범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검사 8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김건희가 요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정도인데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수사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창원에서 서울중앙으로 사건을 이송해서 서울중앙에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김용민 위원 하나 마나 한 소리 하지 마시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소환도 못 하고 있고.

출국금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출국금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 얘기 못 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원래 수사대상자의 출국 여부는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김용민 위원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출국금지 여부는, 왜냐하면 수사를 위해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출금을 했다……

○김용민 위원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출국금지 자체는……

○김용민 위원 어떤 법에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김용민 위원 어느 법에 있느냐고요. 출국금지를 국회에 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법조문이 뭐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김용민 위원 없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수사 진행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김용민 위원 없어요.

법조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법조문을 얘기해 보세요.

법률전문가가 왜 법조문도 얘기 못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법적으로……

○김용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지금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접견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국힘의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김민전, 김기현, 추경호 등등등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변호인 접견입니까, 일반 접견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장소 변경 접견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소 변경 접견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몇 번 했습니까, 이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총 7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 특혜를 줍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장소 변경 접견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원칙입니다만 두 번 이상 되면 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용민 위원 교정청장 허가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 했습니까? 보고하세요. 우리 의원실에 따로 보고하세요, 왜 허가했는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교정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시라고요, 왜 했는지.

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용민 위원 보고하시라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용민 위원 한 번 이상 한 이유에 대해서 왜 허가했는지를 보고하시라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김용민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보고하시라고.

법무부는 왜 뭔가를 보고하라면 보고를 안 합니까? 지난번에 심우정 총장이 김용현 전화번호 물어본 것, 이 사람 어디 있는지 국방부에 확인한 것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보고 안 합니까, 이미 뉴스 다 나갔는데?

뭘 보고를 안 합니까, 조사해서 보고하라면?

○위원장 정청래 차관님, 잘 보고 보고하세요. 아셨습니까?

이상한 보고도 잘 하시더구먼, ‘보고드릴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이건 보고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보고를 잘 하시라고요.

○**김용민 위원** 중요한 문제를……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출국금지, 지난번 공수처장 여기 나왔을 때 그때 누구였지요?
(「윤석열」하는 위원 있음)

‘윤석열 출국금지 했습니까?’, ‘아침에 출국금지 지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사위 하는 중에 ‘아, 지금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공수처 같은 경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해서 출금 요청을 하는 것인데……

○**위원장 정청래** 차관, 일반적이든 이반적이든 간에 출국금지하면 하는 거고 했으면 법사위에 보고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검찰은 수사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금지했다고 맨날 언론 속보 때리잖아요. 그런 건 하고 김건희는 이것도 예외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원칙적으로 출국금지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도……

○**위원장 정청래** 지금까지 그러면 왜 원칙적으로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저희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출국금지 조치 이런 것 많이 나오더구먼, 기사가. 그런데 김건희는 아주 특별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해당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필요했기 때문에 출국금지하는 것이라면……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김용민 위원이 보고하라는 것 아니에요? 보고하시면 돼요. 보고하세요.

그다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하세요.

○**박은정 위원** 김석우 대행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은정 위원** 화면 올려 주세요.

요즘 지하철 타실 일 없으시지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올려 주세요.

준비 안 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에 수용, 지하철에 저렇게 네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일반 수용자들은 방 하나에 8명씩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데 윤석열에게는 수용자 32명이 쓰는 4개의 방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사실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경호관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호관은 구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32명 수용하는 장소, 그 공간 한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인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에 차이가 있고, 그리

고 아마……

○**박은정 위원** 저렇게 4개의 수용거실이 배치된 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박은정 위원** 왜 알려 줄 수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박은정 위원** 저렇게 4개의 수용거실이, 윤석열만을 위해서 구치소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4개 수용거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쓰고 있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1개 실만 쓰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렇게 지금 1개 층을 쓰고 있는 것은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1개 층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저 중에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1개 실만 쓰고 있고 12.32㎡에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은정 위원** 문제는 서울구치소가 수용 정원이 2247명인데 수용률이 152%를 넘기는 과밀 수용인데 윤석열 혼자, 지금 거실의 정원이 여섯 명인데 수용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만 지금 넓은 공간을 쓰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수용거실에 경호관이 들락거렸다는 제보도 있어요.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경호관은 원칙적으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경호관이 상주를 했는지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들락거렸는지 묻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경호관은 저희가, 구치소와 경호처 사이에 협의된 내용은 외부로 출정을 가거나 호송할 때만 예외적으로……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경호관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필요한 경우에, 외부로 나갈 때 그럴 경우에는……

○**박은정 위원** 외부에 나갈 때 경호관이 들어가서 윤석열 테리고 나갔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데 말이, 외부로 나갈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경호관이 들어왔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박은정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경호관은 옆에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저 옆에 보면 별도 차량 탑승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들락거리는 것 맞습니까, 윤석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별도 탑승 출입구 설치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박은정 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어떻게, 차량 탈 때 저쪽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방향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쪽 방향으로 나가는 건 맞습니다.
- 박은정 위원** 윤석열만 저렇게 차량 탑승하려고 저쪽으로 다니는 것 맞습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루트는 있는데……
-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혼자만 저렇게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 박은정 위원** 왜 윤석열만 저렇게 혼자서 차량 탑승하려 나갑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호와 계호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일반인들과 똑같다고 단정……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박은정 위원** 그게 특혜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혜 수용이라는 겁니다. 특혜 수용을 하지 말고 제대로 수용을 하시라고 수용 시설에 수용 점검을 하십시오.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같이 거실에 둬야 되는데 혼자 쓰는 것 자체가……
- 박은정 위원** 독거수용을 하려 하더라도 독거실에 제대로 수용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넓은 데 혼자 특혜 수용시키지 말고.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수용거실 자체를 별도로 저희가……
-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 박은정 위원** 그리고 왜 저렇게 혼자서만 탑승을 시킵니까, 차량을? 그러니까 캐딜락을 타니 마니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정청래** 차관,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 봤어요? 안 살아 봤지요? 안 살아 봤지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 위원장 정청래** 1·2·3방이 독방이에요. 4방부터 혼거방이에요. 1·2·3방이 독방인데 1·2·3 독방은 1.04평이에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살 만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지요, 지금? 12.32m^2 .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3.7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3.7333평이네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이것도 특혜지요. 독거방 1.04평의 3배 넓은 방에 살고 있네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만 종전의 박근혜·이명박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쳐요. 파면이 되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도 이렇게 특혜, 황제 수용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전직과 차이가 있는 것이 경호는 의무입니다. 지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직일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경호를 받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참나,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현직으로서의 어떤 경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경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현직이니까 그렇다 쳐요, 경호가 필요하니까. 백번 양보하더라도 현직이니까 그렇다 칩니다. 현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가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일 경우에는 또 전직 대통령에 다른 경호와 경비가 부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과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경호관들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원칙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그 옆방에 있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비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출정 가거나 할 때 정문, 그러니까 외정문하고 정문 사이에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경호가 시작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훈 차장 영장 청구 왜 세 번씩이나 거부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수사팀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서울고검에서 외부인들이 구성원으로 된……

○위원장 정청래 수사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을 영장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김성훈의 입이 두려운데 우리 검찰도 거기에 연루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에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경호차장의 입이 두려워서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하는 것 아니냐 하는 추론 하나.

또 하나, 경호차장이 잡혀가면 비화폰, 내란의 블랙박스 비화폰 서버가 털리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을 방패 삼아 연루돼 있는 검찰 인사들을 보호하자, 추론 2.

그 두 개 다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해받을 일 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도 아니고, 아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라는 것을 왜 가로막고 나서냐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역시

검찰스럽다라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전달하시고.

경찰이 세 번씩이나 영장 청구해 달라 하는 것을 그것을 돌려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가 뒤에 캉기는 게 있구나, 구린 게 있구나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한테 아직도 충성하는 윤석열의 끄나풀들이 검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 하나만 질문……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법무차관, 제가 최근 검찰 내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군 사건 이첩한 지 며칠 됐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일주일은 훨씬 넘었지요. 어떻게 됐든 적게 말하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서울중앙에서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제가 보고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언론에 나왔지만 일부 그 협의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 그러면 창원지검에서는 지금까지 뭐 해 가지고 이제 중앙지검으로 보냈느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월 12일 자로 임의 제출을 받았고 2월 14일 자에 비로소 이른바 포렌식이 종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도 참여를 하고 관련성에 대한 염밀한……

○**박지원 위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8명 검사 파견 나갔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 사람들이 수사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지원 위원** 이번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지원 위원** 주임검사는 부산지검 차장?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거기가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총괄 지휘하는데 그분도 올라왔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같이 왔습니다.

○**박지원 위원** 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창원지검이나 여기나 똑같은데 왜 했느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아무런 지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현재 현재에 소추돼 있는데 기각 판결을 받으면 돌아와서 복귀해서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하도록 한다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난번에 회의 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당장 오늘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 사건을……

○**박지원 위원** 그것은 김건희 육성이 어제, 그제 시사인에 의거해서 발표되잖아요. 김건희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응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당선자가 명태균하고, 영부인이 명태균하고 그러한 육성이 터져 나오는데도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에서 갖다가 지금 열흘 다 돼 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중간 발표 한 번 없고. 이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권의 대통령후보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참 곤란하다, 이창수 지검장이 와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1분 더 넣어 주세요.

○**박지원 위원** 명명백백하게 여권의 대권후보들이 연루돼 있고 영부인의 육성이 나오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또 추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속히 빨리 수사를 해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여권 대권후보자들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현재 드러난 혐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렇게 검찰의 느림보 수사를 탓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명태균 특검이 법사위, 본회의 통과되면 담당 장관으로서 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하겠어요, 그대로 임명 공표하자고 하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뭐가 재의요구권이지요? 그러면 영부인의 음성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음성이 나오는데, 육성이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말이지요, 명태균 씨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뉴스타파의 봉지육기자를 제가 다 만났어요. 국회의원들도 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재하는 거예요, 기자들처럼. 명태균 씨 월 자기 옆방에, 창원구치소 옆방에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빗자루로 짜 쓸어버린다,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야당에 있다고 하면 검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광석화처럼 할 것 아니에요?

언제 김건희 포토라인에 세워요? 언제 오세훈 시장 불러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적절하게 몇 년 후에 하는 거예요, 몇 달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검찰이.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촉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위원 육성으로만 틀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육성 한 번만 틀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말은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법원행정처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육성을 들어 보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육성은 보도가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다 들었어요. 안 들은 척하고 있는 거지요.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21항 명태군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6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하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1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부터 제96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7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8항 및 제9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0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10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5항 및 제10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7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8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11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3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4항부터 제119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0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1항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원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법제처
처장 이완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교육부
차관 오석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최남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환경부
장관 김완섭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병무청
청장 김종철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기상청
청장 장동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